

# 차 례

## I. 법무부 소개

1. 임 무 .....	3
2. 조 직 도 .....	4

## II. 행정정보공개제도

### 1. 개 요

✿ 연 혁 .....	7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8
✿ 정보공개제도의 운영목적 .....	8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주요개정 내용 .....	8
✿ 정보공개법률의 일부개정 내용 .....	9
✿ 정보공개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 내용 .....	9

### 2. 제도운영 일반

✿ 업무처리 흐름도 .....	10
✿ 청구대상 행정정보의 개념 .....	11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	11
✿ 공개여부의 결정방법 .....	12
✿ 공개 및 통지방법 .....	15
✿ 비용부담 .....	17
✿ 불복신청 방법 .....	19
✿ 제도운영 FAQ .....	22

### 3. 인터넷 행정정보공개 코너

✿ 이용방법 .....	26
✿ 사전정보공개 코너 .....	26
✿ 정보공개청구 코너 .....	27
✿ 공개여부 및 불복신청사례 코너 .....	28
✿ 국회관련 정보공개 코너 .....	28
✿ 정보공개 Q&A 코너 .....	29

## III. 행정정보의 공표제도

1. 개요 .....	33
2. 공표대상 법부행정정보의 목록 .....	33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1. 개요 .....	37
2.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	38

## V. 주요결정사례

✿ 법무부 주요 결정 사례 .....	4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관련 비공개 사례 .....	47
✿ 비(부분)공개 대상 법령 .....	86
✿ 기타 비공개 사례 .....	95

## VI. 주요청구 대상 법령

1. 공개법령 .....	101
* 훈 령 .....	101
* 예 규 .....	105
* 지시·지침, 고시 .....	109
2. 부분공개 법령 .....	111
3. 비공개 법령 .....	115

### 【참고자료】

1. 법무부 부서별 담당업무 및 연락처 / 121
2. 정보공개 관련법령 / 137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137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48  
[일부개정 2007.4.4. 대통령령 제19985호]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58  
[개정 2004.7.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3.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 예규 제751호, 2006. 4. 27] / 160
  -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별첨1) / 165
  -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별첨2) / 169
4. 각종 정보공개 관련 서식 / 173
5. 수수료 산정 기준표 / 181
6.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안내문 / 182



# I. 법무부 소개

1. 임 무
2. 조직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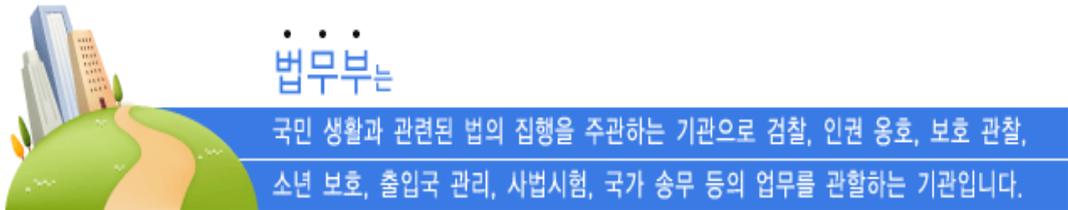
법과 질서의 확립

---





# 1. 임 무



이중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기능으로는 교정, 소년 보호, 출입국 관리가 있으며 그 역할로 교정 기관은 교도소, 구치소 등과 같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수용, 관리하고 교육 및 직업 훈련과 같은 교정, 교화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며, 보호 관찰 기관은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에 일정한 의무를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선도하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고 재범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소년 보호 교육 기관은 소년원과 소년 분류 심사원, 비행예방센터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소년원은 죄지은 청소년들을 별주는 곳이라기보다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들에 학교 수업이나 컴퓨터, 영어 회화 교육 등의 재교육을 제공하여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기관입니다. 소년 분류 심사원은 비행을 저지른 학생이 재판을 받기 전에 머무르면서 청소년 전문가들로부터 상담을 받고 비행의 원인을 알아보는 곳입니다.

출입국 관리 기관은 공항이나 항구를 통해 출입하는 내, 외국인들을 심사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보호,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법무부의 여러 업무들은 우리 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문제를 국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국민 여러분의 편의와 국가 법질서의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 조직도 (본부)



▷ 부서별 담당업무 및 연락처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람

### ※ 기 구

- 본 부 : 2실 3국, ▪ 법무연수원, ▪ 출입국·외국인 본부, ▪ 교정본부
- 소속기관 : 검찰청(대검찰청 등 62), 보호관찰(서울보호관찰소 등 49),  
소년보호(서울소년원 등 17), 교정(서울지방교정청 등 51),  
출입국관리(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36개기관)
- 산하단체 :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갱생보호공단, 교정협회

# II. 행정 정보 공개 제도

## 1. 개요

- ☼ 연혁
- ☼ 정보공개제도의 의의
- ☼ 정보공개제도의 운영목적
- ☼ 개정 정보공개법의 주요내용

## 2. 제도운영 일반

- ☼ 업무처리 흐름도
- ☼ 청구대상 행정정보의 개념
-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 ☼ 공개여부의 결정방법
- ☼ 공개 및 통지방법
- ☼ 비용부담
- ☼ 불복신청방법
- ☼ 제도운영 FAQ

## 3. 인터넷 행정 정보공개 코너

- ☼ 이용방법
- ☼ 사전정보공개
- ☼ 정보공개 청구
- ☼ 공개여부 및 불복신청 사례
- ☼ 국회관련 정보공개
- ☼ 정보공개 Q&A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사회



# 1. 개 요

## ❁ 연 혁

- ▶ 청주시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 ('92. 1.)
- ▶ 대통령 선거공약사항으로 제도도입 추진 ('92. 11.)
- ▶ 국무총리훈령인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시행 ('94. 7.)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정 ('96. 12. 공포, '98. 1. 시행)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제정·시행 ('98. 1.)
- ▶ 정보공개제도의 조기정착과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행정정보공개확대를 위한지침」 제정 (국무총리 훈령 제442호, '03. 6. 시행)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제정 (법무부 예규 제682호, '03. 11. 시행)
- ▶ 정보공개법 개정 ('04. 1. 공포, 7. 30. 시행)
- ▶ 정보공개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04. 7. 30.)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개정 (법무부 예규 제710호, '04. 11. 시행)
-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개정(법무부 예규 제751호. '06. 4. 27.시행)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07. 1. 3)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07. 4. 4)

## ❁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의의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사본·복제 등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목적

정보공개제도의 운영목적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권익 보호와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저희 **법무부**에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활성화를 촉진하여 법무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주요개정 내용('06. 4. 27. 시행)

- 청구정보는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지 않도록 함. 단,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구인의 동의 하에 부분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게 함
- 정보목록은 매월 작성 후 게시 또는 비치하도록 함.
- 총무과는 각 실·국별 기록물등록대장을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록물등록대장의 출력물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도록 함.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수를 1명 이상으로 확대함.

## ❁ 정보공개법률의 일부개정 내용 ('07. 1. 03.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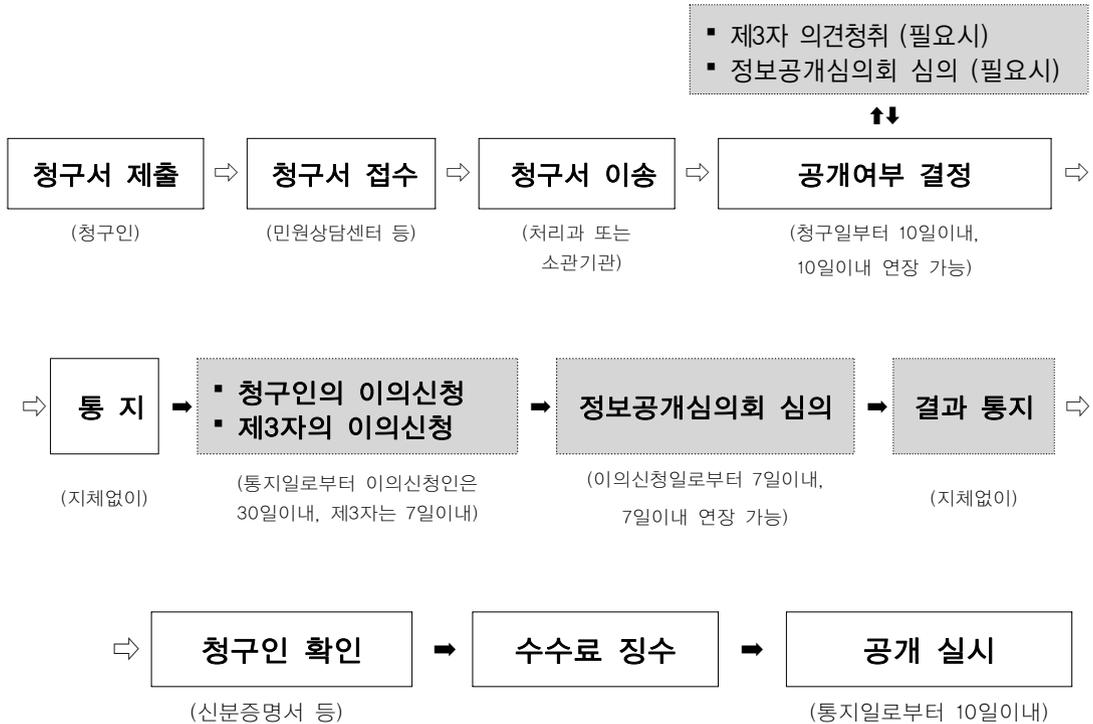
-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청구인이 원하는 경우 정보(비전자적 형태의 정보 포함)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공개에 응하도록 하였음

## ❁ 정보공개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 내용('07. 4. 05. 시행)

- 정보목록작성시 문서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을 포함 하였으며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할 수 있게 함.
-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도록 함.

## 2. 제도운영 일반

### ❁ 업무처리 흐름도



※ 범례    □ 필수절차    ▨ 임의절차

## ❁ 청구대상 행정정보의 개념

- ▶ 청구대상 행정정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입니다. (법 제2조 제1항)
-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시 “미보유” 사유로 비공개 결정·통지하게 됨 (법 제2조 및 제3조)
  - 문서·도면·필름 등의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정보
  - 열람·복사·복제할 수 없는 즉,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무형의 정보

## ❁ 청구권자 및 청구방법

### ▶ 청구권자

- 모든 국민 (자연인·법인, 종중·동창회 명의, 미성년자 포함)
  - ※ 이해관계·사용목적 및 법인격 여부와 무관
-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포함)

### ▶ 청구방법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공개청구하고자 하는 정보와 공개방법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서식 : 참고자료의 관련서식 참조)
- ※ 직접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 구술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대신 작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담당자의 면전에서 구술하여야 함 (서식 : 참고자료의 관련서식 참조)

- ※ 정보공개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구인이 지정한 공개형태 및 교부 방법에 따라 공개함
  - 공개형태 :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전자파일, 복제·인화물 등
  - 공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전자우편 등
  
- 정보공개 신청 : 작성한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민원상담센터 등에 제출합니다.
  - ※ 청구서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Fax), 구술, 인터넷·E-mail 등 정보통신망
  
  - ※ 접수증의 교부 등 :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함. 단, 다음의 경우 교부하지 않을 수 있음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 우편·팩스·인터넷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등
  
- 접수된 청구서의 이송 : 민원상담센터, 인터넷, 팩스 등 창구에서 접수된 정보 공개 청구서는 당해 청구정보를 관장하는 처리부서로 보내고 처리부서에서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하게 됩니다.
  - ※ 공개청구된 정보가 당해 피청구기관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가 아닌 경우 소관기관에 이송 후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이송된 기관과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지함

## ❁ 공개여부의 결정방법

- ▶ **처리기한** : 청구정보를 관장하는 처리과에서는 청구서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합니다.

- ☼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결정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 (법 제 11조 및 동 시행령 제7조)
  -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 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 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 ☼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경우 “정보공개 결정절차(법 제11조 및 제13조)” 없이 공개함
  -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 ※ 대체적으로 일반 간행물, 팜플렛, 통계서·보고서·안내서, 의견서, 진정서 등이 해당되며, 이미 공개가 된 사항도 이에 해당할 수 있음.
  
- ☼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접수일 기준)로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청구인은 즉시 이의신청 등의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처리기간 산정시 초일(접수일)과 중앙행정기관의 휴무 토요일은 산입하고 공휴일은 제외함

▶ **공개여부의 결정방법** : 보유·관리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원문 그대로 모두 공개하게 됩니다. (법 제9조 제1항)

☼ 공개여부의 결정 내용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임

◦ **공개결정** :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 **부분공개 결정** : 공개대상 정보에 비공개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두 부분을 서로 분리할 수 있는 경우 비공개 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 **비공개 결정** : 법 제9조 제1항의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비공개대상 행정정보의 기준에 대하여는 비공개 대상정보 부분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람

☼ 만약, 공개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 또는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 기관 또는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됨

◦ 의견조회 통지를 받은 제3자 등은 의견이 있을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함

◦ 비공개 요청한 제3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이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30일 이상의 간격을 두며 이를 통보 받은 제3자 등은 이의신청(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보공개심의회** : 공개 청구된 정보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에는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위원장), 각 실·국 주무과장(위원, 6명) 외에 심의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외부위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별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기타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 공개 및 통지방법

### ▶ 공개방법

- ☀ 공개형태 및 교부방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청구서에 기재된 공개형태 및 수령방법에 따라 결정하게 됩니다.
  - 문서, 도면, 사진 : 열람 또는 사본, 출력물, 매체저장물 교부 등
  - 필름 및 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 복제물의 교부 등

### ▶ 결정서의 통지

- 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시 : 결정서에 “공개내용, 공개형태 및 교부방법, 공개 일시(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수수료”를 기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 청구인은 결정통지서에 기재된 공개방법(공개기일, 공개방법, 소정의 수수료 등)에 따라 공개에 응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정보공개청구 사안은 종결처리 될 수 있음
- ※ 수수료에 대하여는 비용부담 부분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비공개 결정시 :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비공개 이유 및 근거, 불복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 ※ 불복구제 절차에 대하여는 불복구제 절차 부분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본인 확인

- 피공개권자 : 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필요시 그 정당한 대리인으로 확인된 자에게 공개하게 됩니다.
- ※ 본인 확인 등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등
  - 본인에게 공개할 때 :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인인 경우 :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외국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등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법정대리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 : 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기타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본인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일반 행정자료 사본제공 등”의 공개정보에 대하여는 본인여부 확인을 생략함

## ❁ 비용부담

▶ **수익자 부담원칙** :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 **우송료** :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 우편요금은 공개정보를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로 한정되며, 인터넷 등 우편요금이 소요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음

▪ **수수료** : 참고자료의 “수수료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방법** : 우송료는 우표로 납부하고 수수료의 경우 법무부 본부 및 소속 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산하단체에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단,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수수료 등을 수입인지로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음

## ▶ 수수료의 감면 등

▪ **면제** : 인터넷, E-mail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공개 시 일천원 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합니다.

- 감 면 : 공개청구를 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 수수료의 50%를 감액”하여 부과합니다.

☼ 감액을 인정하는 경우 (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 비영리의 학술·공익 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
-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
- 기타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 감면대상은 수수료에 한하며, 우편요금은 감액대상이 아님



## ❁ 불복신청 방법

### ▶ 이의신청

- 신청권자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청구인 또는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하는 피청구기관으로부터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신청기간
  -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청구인 :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
  - ☼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제3자의 의사에 반한 피청구기관의 공개통지를 받은 당해 제3자 :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신청방법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서면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인터넷 등으로도 가능)하면 됩니다.
  - ☼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 (서식 : 참고자료의 관련서식 참조)
    -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결과통지

- ☼ 처리기한 :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 연장가능)에 인용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 이의신청 사항은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또는 소속 기관 및 산하단체별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인용여부를 심의·의결함
  -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에는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위원장), 각 실·국 주무과장(위원, 6명) 외에 심의의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외부위원 2명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소속 기관 및 산하단체별로 정보공개심의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음
  - 기타 정보공개심의회에서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및 정보공개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
- ☼ 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 결정·통지하는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 행정심판

▪ 청구 적격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 청구기간

- ☼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아니됨

- **청구방법** : 행정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합니다.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 상급행정기관이 원칙임

※ 단, 산하단체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법무부장관이 됨

## ▪ 재 결

-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 행정소송

- **제기권자** : 정보공개와 관련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청구인

※ 이의신청·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제소기간** : 결정이 있는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보의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결정이 있는 날 또는 재결이 있는 날부터 1년이 지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 제도운영 FAQ

### ▶ 사전공표된 정보에 대하여 정보공개 청구한 경우

- ☀ 공공기관이 공개하여야 할 “정보”는 정보공개법의 규정취지와 동법 제2조 제1호의 해석상 “비공개정보”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
- ☀ 모든 국민(교정시설 수용자 포함)은 자신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인터넷 검색 등) 손쉽게 공개된 정보를 취득 할 수 있음
- ☀ 다만,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여 “공개정보의 위치 또는 열람방법”을 안내해 주거나, 정보공개법 제16조에 의한 “즉시공개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 ▶ 정보를 일괄 청구(정보 불특정)하는 경우

- ☀ 정보공개법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라 함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 등을 말하고, ‘공개’라 함은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출력물을 교부하는 것임
- ☀ 정보공개법의 규정 취지와 동법 제2조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제2호의 해석상 공공기관이 공개해야 할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 그 실체가 존재하는 구체적인 정보에 한정되어 있음
- ☀ 청구인은 정보의 내용을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도록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등을 제시하여야 할 것임(서울행법 2004. 4.28. 선고 2000구 4179 판결)

### ▶ 영수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

-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및 매출전표·영수증 등에 포함된 개인 및 법인 등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정보로써 보호받아야 함(대법원 2003. 3.11. 선고 2001두6425 판결)

### ▶ 정보공개 청구의 이송

- ☼ 해당 기관에서 보유·관리하지 않는 정보를 공개 청구한 경우로서,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기관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경우 해당 기관으로 이송
- ☼ 다른 기관에서 생산한 정보라도 직무상 취득·관리하고 있는 경우 업무처리의 책임은 공개청구를 받은 기관에 있으므로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경우 원래 생산기관으로 이송하지 말고 당해 기관에서 처리하되 원래 생산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 여부 결정

### ▶ 이송의 한계

- ☼ 소관기관이 복수인 경우, 이송할 대상기관이 너무 많아 이송자체가 큰 업무 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이송을 생략하고 소관기관을 안내하는 것으로 같음

- ☼ 청구인이 소관기관을 알고 있고 소관기관에 청구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서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목적 등으로 청구한 것이 명백한 경우 소관기관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것만으로 갈음

▶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 처리**

- ☼ 정보취득 목적이 아닌 진정·질의·건의 등 민원 성격의 정보공개 청구로서 정보공개 처리 절차에 의하는 것이 청구인에게 실익이 되 않는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민원으로 이첩하여 일반 민원사무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

▶ **반복 청구의 처리**

- ☼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청구의 경우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①항을 준용하여 종결 처리할 수 있음

▶ **청구정보의 양이 과다할 때**

- ☼ 청구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교부 완료)

▶ **공개 일시 경과시 종결 처리**

- ☼ 결정통지시 지정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수수료 미납 등)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음

## ▶ 즉시 공개

-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나 일반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이미 여러번 공개로 결정·통지된 정보 등에 대하여, 공개 청구한 경우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절차(공개여부의 결정 및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작성·교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정보를 즉시 제공하는 제도
- ☼ 공개여부를 별도로 판단할 필요가 없고 청구인에게 바로 정보를 교부할 수 있는 경우임(일반적으로 청구인이 직접 방문하여 청구한 경우에 해당)

## ▶ 정보공개시 정보가공의 허용 문제

- ☼ 정보공개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 등의 형태로 교부하는 것으로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음
- ☼ 여러 종류의 정보가 복합되어 있거나 여러 부서로부터 취합하여 공개하는 경우 등 정보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오히려 큰 업무부담을 유발하는 경우, 청구인도 정보의 가공에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정보의 가공 공개도 허용될 수 있음

### 3. 인터넷 행정정보공개 코너

#### ❁ 이용방법

▶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 (www.moj.go.kr) → “정보공개” 코너**

- 정보공개 코너의 구성 : 사전정보공개, 정보공개청구, 공개여부 및 불복신청 사례, 국회관련 정보공개, 정보공개 Q&A

#### ❁ 사전정보공개 코너

- ▶ 이 곳은 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법무행정에 관한 주요정책자료, 예산집행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코너입니다.

※ 정보공개 목록

- 국민들의 정보공개 편의도모를 위하여 법무부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주요정책 추진과정 공개

-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를 높이고 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 부가 추진 중인 주요정책을 실시간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자료실

-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법무부에서 정기적으로 공표하고 있는 행정정보 및 결재문서를 실·국별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 ☀ 업무추진비

▫ 분기별 장·차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 법무부에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공표대상 문서의 전자결재 완료시, 결재문서의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자동게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단, 제공정보의 성격에 따라 결재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게시되거나 자동게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 정보공개 청구 코너

▶ 이 곳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 코너로서 정보공개 청구는 물론 공개정보도 제공되어 매우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 이용안내

▫ 업무처리 절차, 정보공개 방법, 정보공개청구자 및 대상정보, 비공개 대상 정보, 이의신청 및 수수료 안내, 정보공개제도 이용 안내서 내려받기 등

☀ 관련서식 ⇒ 열린정부 홈페이지로 연결

☀ 실국별 정보공개 담당자 안내

☀ 정보공개 청구신청 ⇒ 열린정부 홈페이지로 연결

☀ 인터넷에 의한 정보공개청구방법은 서면에 의한 정보공개 청구방법, 공개결정 절차, 통지방법 등과 동일하며 인터넷으로 공개정보를 받으시는 경우 우편료는 납부하지 않음

- ※ 향후 인터넷 정보공개 코너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중인 정보화전략계획(ISP)에 의하여 국민들이 더욱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대폭 정비될 예정입니다.

## ❁ 공개여부 및 불복신청사례 코너

- ▶ 이 코너에서는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 편의도모와 법무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여부와 불복신청에 대한 처분 및 결정·판결 사례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 ❁ 국회관련 정보공개 코너

- ▶ 이 곳은 국회자료제출 현황과 그 주요내용, 기타 법무정책 관련 주요이슈 등을 공개합니다.

- ※ 주요정책자료

- 국회 자료제출 현황과 그 주요 내용, 기타 법무정책 관련 이슈 등을 공개합니다.

- ※ 법령 제·개정

- 법무부 소관 법령의 국회에서의 제·개정 추진현황 및 주요 내용 등을 공개합니다.

- ※ 예산

- 국회 예산제출 현황, 예산안 주요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을 공개합니다.

- ※ 국회의 정책 제언

- 국정감사 등을 통한 국회의 정책제언 내용과 그 조치현황 등을 공개합니다.  
예산제출 현황, 예산안 주요내용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을 공개합니다.

☀ 국회현장

- 정기(임시)국회, 국정감사 등에서의 질의·답변 현황 등 국회진행상황을 공개합니다.

❁ 정보공개 Q&A 코너

- ▶ 이곳은 우리 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할 수 있는 민원인들을 위한 서비스 공간입니다. 여러분의 궁금한 사항을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Ⅲ. 행정정보의 공표제도

1. 개 요

2.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



---

법과 질서의 확립

---

 **법무부**



## ❁ 행정정보 공표제도의 개요

- ▶ 공표제이란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주요정책자료, 예산집행 내역 등을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제도입니다.

- ☼ 법 제7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등

- ☼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개확대를 위한 지침(국무총리훈령 제442호, '03. 6.) 제5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

- 국정과제·자체중점과제 등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연구보고서·회의록 또는 시청각자료,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

## ❁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 ▶ 법무부에서는 행정정보의 공표를 위하여 30여종의 공표대상 정보의 목록과 범위,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과 범위, 시기 등은 별첨자료의 「법부무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 “행정자료실”과 연계시스템 구축

- ☼ 법무부에서는 신속·정확한 정보제공을 위하여 공표대상 문서의 결재 완료시,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자동게시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 ☼ 제공정보의 성격에 따라 결재일로부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 게시되거나 자동게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IV. 비공개 대상 행정정보



공정하고 투명한 법집행

1. 개요

2.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 ❁ 비공개 대상정보의 개요

- ▶ 공공기관 등에서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대상이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범죄의 예방, 수사, 형의 집행, 교정 등 일정한 사항의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비공개 대상정보 (법 제9조 제1항)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2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3호)**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4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제5호)**
-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6호)**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제7호)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8호)
- ▶ **비공개대상정보 범위의 축소** :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를 축소하여 행정편의적 적용을 통한 비공개 사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별로 업무성격에 맞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음(행정정보의공개확대를위한지침, 국무총리훈령 제442호, ‘03. 6.)

## ❁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 ▶ 법무부에서는 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를 우리부 성격에 맞게 비공개 대상 업무명과 그 범위 등을 구체화하여 정하고 있습니다.
- ☼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업무명과 범위 등은 별첨자료의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V. 주요 결정 사례

- ❁ 법무부 주요 결정 사례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9조관련 비공개 사례
- ❁ 비(부분)공개 대상 법령
  - ❁ 기타 비공개 사례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사회



## ❁ 법무부 주요 결정 사례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3조 관련 비공개 사례

※ 부분공개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정책홍보 관리실	역대 법무부장관, 법무부차관, 검찰총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실·국장,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역대순, 성명, 재임기간, 퇴직사유, 최종학력 및 출신학교명	법 제2조 및 제3조	청구 정보 중 역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법무부 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부 실·국장의 역 대순, 성명, 재임기간 공개. 그 외 정보 부존재 자료임
정책홍보 관리실	2006년 현재 비공개 훈령·내부규정(지침) 목록(통계·현황자료)	법 제2조 및 제3조	통계·현황자료는 부존재 자료로써 비공개 결정함
정책홍보 관리실	법무부장관·차관의 수용자에 대한 표창 수상 내역	법 제2조 및 제3조	법무부장관·차관의 수용자에 대한 표창 수상 내역은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임
교정국	1990년 이후 수용자 자살사고 관련 통계 자료	법 제2조 및 제3조	1996년 이후의 자살수용자 인원현황을 공개(1996년 이전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
교정국	1990년 이후 수용자 자살사고 발생내역	법 제2조 및 제3조	2000년 이후 자살자 현황을 공개하며, 이전 자료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국	교도작업제품 분기별 지정품목 공급실적 (2004~현재)	법 제2조 및 제3조	공급실적은 분기별로 받지 않고 연간실적으로 보고를 받고 있으므로 연간 공급 실적 공개
교정국	교정시설에서 교도작업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 및 납입 영수증 일체	법 제2조 및 제3조	교도작업 제품의 판매대금 전액은 국고로 입금되며 별도로 이익금에 대한 납입 영수증은 없어 비공개함
교정국	담요 구입가, 판매가 및 담요 차익금 사용처	법 제2조 및 제3조	담요 차익금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므로 구입가 및 판매가에 한하여 공개함

## ☼ 비공개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국	교정협회에서 관리, 입찰한 자비 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 (개별품목)	법 제2조 및 제3조	교정협회에서 관리, 입찰한 자비 부담물품의 입찰가 및 공급가(개별품목)의 정보는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
교정국	교정시설 내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시행방침 및 상부관서의 지시공문 일체	법 제2조 및 제3조	정보공개업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하고 있으며, 별도의 시행지침 및 지시공문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음
교정국	법무부 교정국 기관운영비 집행 내역서	법 제2조 및 제3조	청구정보는 내용이 불분명하고, 위와 같은 내역의 예산은 집행되지 않아 공개대상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움으로 비공개 결정함
교정국	배방 및 시찰업무(교정 831-8437) 이후에 개정된 사항	법 제2조 및 제3조	‘배방 및 시찰업무의 철저’ 지시공문은 1971.5.12. 제정된 이후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없음
교정국	법무부가 지정한 각 교정시설별 요시찰 인원 및 법무부 요시찰 수용자 관리지침, 훈령, 예규, 지시공문	법 제2조 및 제3조	법무부에서는 각 교정시설의 수용자를 요시찰로 지정·관리한 바 없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님
교정국	2005년 법무부 산하 교정기관 전체에 수용되어 있는 수용자와 관련된 교정사고 일체	법 제2조 및 제3조	청구정보는 청구범위가 광범위하고 청구내용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될 있어 대상정보를 특정하기가 곤란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국	교도작업 생산품인 ‘수용자 사용 전기 면도기’에 대한 공산품 품질안전 검사 승인 내역	법 제2조 및 제3조	건전지(1.5V 2개)만 사용하는 전기 면도기는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전기용품이 아니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상(별표1, 별표2 참조) 품질표시공산품 및 안전검사대상 공산품이 아니므로 청구한 자료는 없어 비공개함. 다만,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품질실험서는 보유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청구하면 공개 하겠음
교정국	자비부담 물품에 대한 판매금액 및 순수이익금	법 제2조 및 제3조	자비부담 물품은 해당 교정기관에서 생산하여 수용자들에게 직접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협회의 주문에 따라 납품하고 수용자들에게 대한 판매는 교정협회에서 하고 있음 따라서 각 생산품들의 판매 금액 및 순수이익금에 대한 자료 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비 공개함
교정기관	진단서 발급대장	법 제2조 및 제3조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관리 보관”하는 정보를 말하므로 청구한 정보는 부존재 자료임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청구인과 관구교감의 면담기록	법 제2조 및 제3조	관구교감과 면담시 모두 상담기록을 남기는 것은 아니며, 청구인과의 면담기록은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부존재 자료임
교정기관	00교도소 2동 하층 근무자 교사 000의 일일출원사항 기록 노트	법 제2조 및 제3조	사동 근무자가 사동 동정을 메모하는 개인 메모장으로 공문서라 볼 수 없으며 일정시간(근무 교대 후)이 지나면 폐기처분하여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지도 않으며,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님
교정기관	조직폭력사범 관련 총 인원 및 취업장 배치현황	법 제2조 및 제3조	조직폭력사범의 취업장 배치관련 정보는 없으며, 총 인원 관련 문서는 보라미시스템상의 ‘조직폭력사범명단’이라는 문서가 있으나 개인의 신상 관련 정보를 제외하면 정보로서의 가치가 없음
교정기관	자변약품 감사결과보고서	법 제2조 및 제3조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지 않은 부존재 자료임
교정기관	2004~2005.7월까지 출소 수용자 지원용 의복 및 신발에 대한 기증, 사용, 재고내역	법 제2조 및 제3조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취득하여 보유·관리하고 있는 문서 등과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부존재 자료임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치 료 감호소	치료감호소 물품지급현황	법 제3조	물품지급현황 공개 청구는 내용이 모호하고 지급 범위 등이 광범위하므로 지급대상, 품종 및 지급기간 구체적 명시하여 재청구 요구함
정책홍보 관리실	법무부 훈령·예규 목록 등 행정규칙 개정 및 폐기된 내용에 관한 사항	법 제3조	청구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청구 정보를 명확히 하여 재청구하는 경우 추후 공개여부 검토
교정국	청구인이 2000년 이후 교도소간 이송되었던 이송신청문서 및 이송지휘 명령서 등	법 제2조, 제3조 및 법 제9조 제1항 제2, 4, 5호	2004년도 이송관련 문서는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2004년 이후의 이송 관련 문서는 당해 문서에 개인의 이름, 죄명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형의 집행 또는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교정행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관련 비공개 사례

### ☀ 부분공개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정책홍보 관리실	통영구치소 신축 관련 준공보고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중요보안시설에 해당하므로 설계도면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
교정기관	교도관 근무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항(동태보고 등)을 제외한 부분 공개
교정기관	신분장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동태시찰, 수용생활 태도 등 교정행정 업무 수행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어 형의 집행, 교정 직무 수행에 곤란한 정보를 제외한 후 공개
보호국	치료감호심의위원 회의 보호감호 가 출소 취소결정 심의 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심의내용을 공개할 경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사유가 있으므로 비공개
교정기관	분류심리검사 결과	법 제9조 제1항 제5호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포과정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하여 이를 제외하고 부분 공개
정책홍보 관리실	법무부 소속(산하) 위원회 및 위원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혼재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정책홍보 관리실	법무부 전체직원 징계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징계내역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이름·주민 등록번호 등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정책홍보 관리실	정부위원회 구성 및 운영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위원 명단이 공개되는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 등이 곤란한 위원회의 위원명단은 비공개
총무과	행정정보의 공표대상 목록 및 정보공개심 의회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의 이름 및 주민등록 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있어 이를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 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부분의 정보는 공개함
총무과	정보공개처리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총무과	연구용역 발주내역 (용역명, 소관부서, 계약자, 계약금액 등) 및 연구진의 성명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개청구 정보인 연구진의 성명은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이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함
총무과	장소변경 접견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외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계구사용감독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번호, 성명, 수용거실 등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교정기관	문예용품 지급허가자 명단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
교정기관	민원처리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
교정기관	기증금품 접수·관리 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
교정기관	사동청소부 배치 및 이동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번호, 성명, 죄명, 형기, 형기종료일 등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위 정보를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수용자 교육예산 집행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외
교정기관	수용생활지원 금품 접수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수번, 성명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이를 제외하고 부분 공개
교정기관	수용자 사회병원 이송 진료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수용자의 개인신상 정보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외 후 공개
교정기관	수용자 외래진료비 국가 부담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 등 특정인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서면·면진진정 처리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성명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 후 공개
교정기관	청원사항 처리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성명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 후 공개
교정기관	수용자 조사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성명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 후 공개
교정기관	수용자 출원사항 접수 처리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타 수용자 번호, 성명 등이 혼합되어 있어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 정보를 제외한 정보공개
교정기관	작업상여금 지급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수번, 성명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교정기관	출소자귀가여비 및 피복 지급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
교정기관	행형성적 채점순위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공개
교정기관	관본도서 대여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성명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 후 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교화상담자 지정 및 감독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타인의 인적사항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하고 비공개
교정기관	서신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타인의 이름 및 주소를 포함하여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부분 공개
교정기관	접견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접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 후 접견표 공개
교정기관	의료용품 허가 수용자 (개인별)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사항은 제외하고 의료보조기 사용현황만을 공개
교정기관	교화행사 계획부 및 시행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성명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공개
교정기관	작업지정 통지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수번, 이름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 인격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이를 제외하고 부분공개
교정기관	간행물 접수 및 배부 장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성명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 후 공개
교정기관	특수우편물 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성명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 후 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교화행사 계획부 및 교화기자재 관리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내용에는 후원자들의 이름 등이 혼합되어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공개함.
교정기관	무의탁 출소자 귀가 여비 지급 관련철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수급자의 이름, 수번, 죄명 등이 혼합되어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후 공개
교정기관	자변약품 수불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수번 죄명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후 공개
교정기관	신분장 대출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른 수용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
교정기관	소포물 접수 및 검사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른 수용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
교정기관	차입품 접수 및 검사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다른 수용자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
교정기관	정보공개처리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정보처리대장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가 판단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전화사용 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타 수용자의 전화사용내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공개
법무실	민원사항 회신 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민원사항 회신문상의 수신자 이름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수신자 이름을 제외한 민원사항 회신 내용 공개
인권국	전국공권력피해자 연맹 등록말소에 관한 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 정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위 사항을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교정국	재활용품 판매이익금 사용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외
교정국	혈청검사 예산 및 자료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제외
교정국	서울청 산하 청원 조사관의 성명, 직위, 이력, 사진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성명, 직위는 공개하고 이력 및 사진자료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우려로 비공개
교정기관	수용자 외부병원 이송 진료 및 각 병명별 소요예산 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개인정보 누설 및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 공개
교정기관	사건기록 및 전과기록 등 조회 회보 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형의 집행, 교정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보고문 접수처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보고문에는 타인의 성명 죄명 등 개인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제외하고 본인 관련 부분만 공개
교정기관	종교위원 및 교화위원의 활동목적 및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교정행정 직무집행의 현저한 곤란 초래 및 개인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징벌집행 사건기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교정행정 직무집행의 현저한 곤란 초래 및 개인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특별진급자 명단 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교정행정 직무집행의 현저한 곤란 초래 및 개인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부 및 영수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성명,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교정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외한 지출원인행위부 공개
교정기관	민원, 소송서류 접수·전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타 수용자들의 소송 전달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진행중인 재판 및 교정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 후 본인관련 민원, 소송서류 접수·전달부 공개
교정기관	근무보고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침해 우려 정보 및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삭제 후 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사용에 따른 지출 원인행위부 및 영수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성명, 계좌번호, 연락처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교정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영수증 관련 정보를 제외한 지출원인행위부 공개
교정기관	민원, 소송서류 접수·전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타 수용자들의 소송 전달사항을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진행중인 재판 및 교정 업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제외 후 본인관련 민원, 소송서류 접수·전달부 공개
교정기관	근무보고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침해 우려 정보 및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삭제 후 공개
교정기관	목격자 자술서 (진술조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침해 우려 정보 및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부분 공개
교정기관	피해자 자술서 (진술조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침해 우려 정보 및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부분 공개
교정기관	이해당사자(상대방)의 진술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침해 우려 정보 및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부분 공개
교정기관	참고인 진술서 (진술조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침해 우려 정보 및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부분 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합의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합의서의 일방 당사자의 성명 등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 및 교정업무수행 저해 우려가 있어 제외 후 공개
교정기관	정보화 교육 및 정신 교육 외부강사 초빙 예산집행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침해 우려 정보 및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부분 공개
교정기관	마약류사범 교육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혼합되어 있어 위 사항을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보호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 (구성형식, 회의개최 횟수, 수당, 위원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위원명단은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개인 신상을 제외한 부분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조사관계 서류일체 (청구인 조사관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	공개시 교정업무 수행곤란 및 의사결정 저해 우려가 있어 징벌위원회회의록 제외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참고인·상대방·진술서와 진술조서를 제외한 한 정보 공개
교정기관	수용자 징벌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6호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 침해 우려 정보, 의사결정과정 정보 및 교정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교정기관	각 부식별 공급계약 내용 및 납품업체 등록 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납품 단가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기관별 지급약품 품목, 각 품목별 입찰내역, 계약, 입찰공고문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법인,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하는 납품 단가 및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
교정기관	구매물품 소비자 가격 및 회사명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납품업체의 재산보호 및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부분 공개
교정기관	위탁업체 생산단가, 판매가 및 그 사용 내역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제외한 후 공개
교정기관	구매물품 단가 및 납품업체 선정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구매단가 산정 내용은 각 거실에 배포한자체 공급품목 가격표에 공개되어 있고, 납품업체 선정 기준은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내부관리에 속하는 사항으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교정기관	재활용품 수입, 지출 및 영수증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영수증 등은 제외하고 수입 지출 내역 공개
교정기관	교도소별 자변약품 (수용자 구매약)목록 및 가격과 교도소별 약값 산정방식(입찰)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청구 내용에는 입찰 계약 등의 자료와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의하여 자변약품 목록만 공개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부분공개 사유
총무과	정보공개심의회 참석 명단과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2조, 제3조	회의록은 부존재문서이며, 외부위원의 이름 등은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비공개하고 참석자 명단 공개함
법무실	2004년도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형사소송법 과목의 응시자 평균 점수 및 대학모의고사 응시생 개별점수, 대학모의고사 문제, 서울대 등 5개 대학 합격자 수,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1문에 대한 시험위원별 점수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사법시험 법 제18조 제2항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공개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외하고, 법무부가 입수하여 이미 공개한 대학 고시반 모의고사 문제는 공개함
법무실	2005년도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험위원 명단, 예산집행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사법시험 법 제18조 제2항	비공개 정보는 공개할 경우 사법시험 정답에 관하여 부당한 시시비비가 제기되고, 우수한 시험위원의 위촉이 곤란해지며, 대다수 선의의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외하고, 법조인력정책과 예산집행내역 공개함

## ※ 비공개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정책홍보 관리실	근무성적 평정점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평정 규정(대통령 령 제18421, 04. 6.11.)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8421, '04. 6.11.) 제13조에 의하여 비공 개로 분류되어 관리 되고 있는 사 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
교정국	전국 교도소 재소자 수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교도소 등 교정시설은 “국가보안목 표시설”로서 수용인원 등이 공개될 경우 그 시설의 규모 등을 추정할 수 있어 위기상황발생시 시설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00교도소 수용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 등 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출국금지 · 정지 관련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입국금지 관련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교정국	정보사항 처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정책홍보 관리실	법무시설 기준규칙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검찰청, 교정시설 등에 대한 시설 면적 기준 및 시설 주요부분의 설계 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어 형의 집행, 교정 등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 우려
치 료 감호소	치료감호 가중료 처분심사 자료, 정신감정서, 진단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처분심사자료는 수용 및 형집행 등에 관한 사항이며, 진료기록 등은 입원 중 치료업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치 료 감호소	피치료감호자 심사관련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심사자료는 수용 및 형 집행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치 료 감호소	치료감호소 근무자 수칙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근무자의 근무방법의 노출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결정함
치 료 감호소	청구인의 범죄경력조회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범죄경력조회서는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 수감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국	교정기관(본부 교정국 포함)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 및 자료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청구정보는 교정행정 전반에 관한 국회의 국정감사를 위하여 작성된 자료로써 범죄의 예방,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교정국	가석방심사위원 구성명단 (최근 5년간)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경우 외부로부터의 청탁, 압력 등으로 가석방 업무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함
교정기관	○○교도소의 CCTV 녹화기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업무 집행과정 중 보안 사고를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대처하고 각종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는 등 다수의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공익적 목적의 교정에 관한 내부적 보조 자료로서, 이를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수용관리의 공익적 목적에 위배되는 등 그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구매물품 검수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곤란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귀휴 심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곤란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기관 병동 및 진료실의 CCTV 녹화테잎 및 대화녹음테잎	법 제9조 제1항 제4호	CCTV녹화의 목적은 교정기관의 수용관리를 위하여 촬영·취득한 정보로, 특히 수용자에 관하여는 기밀성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현재 조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정보로써 공개할 경우 조사·징별·사건 송치 등 관련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동태시찰 상황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동태시찰 상황부에는 수용자들의 문제행동, 수용시 특이사항 등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개인상담카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개인상담카드의 정보에 수용자와 직원이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을 처우상 참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으로 이를 공개할 경우 상담업무의 효율적인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보안장비 수불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각종 보안장비의 명칭, 수량 등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정보로써 공개시 교정행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관구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관구책임자의 효율적인 수용관리 및 처우를 위한 정보 및 각종 보고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될 경우 효율적인 교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교정기관	호송시 계호계획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용관리 등 교정행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교정기관	교도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공개될 경우 효율적인 교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근무 배치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근무배치표에는 근무개소, 교대 방법, 교대시간 등이 기재되어 있어 공개시 교정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결정함
교정기관	본인 신분카드에 있는 문제수용자 동정보고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문제수용자의 동정 등의 사항이 공개될 경우 형의 집행, 교정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사항으로 비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문제수용자 수용실태 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구치소 수용중 본인의 신상, 행정에 대한 교위 이상의 개인면담 기록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개인면담 기록부는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가 아니며, 기관의 수용관리를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교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수형자 분류 및 누진 월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개시 수용자 분류처우업무 및 교정행정 업무수행 곤란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장기수용자 상담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용자에 대한 행동관찰과 수용처우에 대한 주관적인 의견 기록하는 정보로써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교정기관	연도별 교정사고 처리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동종의 교정사고 발생 및 모방행위로 인해 수용질서유지 등 교정업무 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청구인의 개인 교화 상담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화담당공무원이 수용자와 상담내용을 기록하며 수용자 동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교정행정에 대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외부병원 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근무자의 주관적인 기록 등이 수용자에게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조사 수용 중 기동대 비디오 촬영 테이프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업무 집행과정 중 보안 사고를 조기에 발견, 신속하게 대처하고 각종 사고나 위험을 예방하는 등 다수의 수용자에 대한 원활한 관리를 목적으로 운용되는 공익적 목적의 교정에 관한 내부적 보조 자료로서, 이를 개인의 사적 목적으로 공개하는 경우, 수용관리의 공익적 목적에 위배되는 등 그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직원교육 및 훈련관련철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당해정보에는 수용처우와 관련된 내용, 수용관리의 기법 등 직원만이 알아야 될 내용으로 공개시 공정한 교정업무 수행 및 처우 기법 활용에 지장을 초래
교정기관	청구인의 거실배방 지정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거실 배방표는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수용사동 검사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정문일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보안시설에 출입하는 사유 및 출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시 도주 등 교정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비공개
교정기관	시찰시간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이 곤란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신문열람 제외 기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문제수용자생활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교정관계 정보보고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정보보고 문서에는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시 교정행정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교정사고 원인과 조사, 직원문책 여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사고 원인 및 조사 등을 공개할 경우 교정행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독거수용자 시찰내용 및 보고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용자 시찰은 수용기관이 수용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취득한 문서로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컴퓨터 기초·초급반 교육계획안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청구정보는 교정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특수한 업무의 성격상 공개될 경우 당해 업무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교정위원 상담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용자와 교정위원이 상담과정에서 여러 사항을 처우상 참고하기 위해서 기록한 내용으로 이를 공개시 상담업무의 효율적인 공무수행에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분류처우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수용자에 대한 각종 처우지침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공개할 경우 형의 집행, 교정 등의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함
교정기관	수용자 급수별 인원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형의 집행, 교정업무 등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
검찰국	○○사건관련 형사사법공조 협조 공문 및 관련자료, 수사진행 상황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공개청구한 정보에는 관련 형사 재판 및 수사가 현재 진행중으로 공개시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업무의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수용자 지급물품 재고 관리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국익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국가 중대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국익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양곡 관리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국익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국가 중대 이익을 현저히 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에 곤란을 초래
정책홍보 관리실	소년보호직 제한경쟁 특별채용 시험문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정책홍보 관리실	홍성지청 전기공사내역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입찰계약 내역에 관한 사항은 공정한 업무수행 지장 초래
감찰관실	감찰위원회 위원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될 경우 공정한 감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법무실	공증인 임명기준에 관한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공증인 임명과 관련한 인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감찰관실	2001년 이후 교정국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서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감찰관실	법무부에서 광주교도소 의무과를 감사한 인원, 성명, 직급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감찰관실	법무부 교정관련 감사에 대한 결과 및 징계결정 기록대장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감찰관실	2005년도 의정부 교도소 행정감사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교정기관	교정협의회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당해정보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발언, 결정과정 등 향후 교정 위원들의 교정활동 등 발전적인 추진발향을 위해서 회의하는 것으로 공개시 위원들의 원활한 의사결정 회의에 지장 초래
감찰관실	최근 5년간 서울구치소 의무과의 감사를 실시한 결과 및 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감찰관실	출소자 귀가여비 지급액 지급 기준 및 현황에 대한 감사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감찰관실	2005년도 감사실적 보고서와 그에 따른 징계 및 고발한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교정기관	물품구입 검사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검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교정기관	고충처리 위원회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당해정보는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과 의사결정 과정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구매 관련 판매 계약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입찰업체의 선정 등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향후 입찰업무에 현저한 지장 초래
교정기관	수용자 자변약품 검사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검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교정기관	2000~2005년까지 관약구매입찰 품목, 가격에 관한 내역 및 약품 집행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인권국	고문방지협약 유보조항 수락 및 선택의정서 가입 의견조회에 관한 문건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공개청구한 정보는 법무부 내부에서 의견을 계속 수렴하고 있는 상태로, 법무부의 최종의견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현 상태에서 공개할 경우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법무실	도산제도 개혁을 위한 컨설팅 용역 “도산법 최종권고안 연구보고서” (2000년 법무법인 세종 발행)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당해정보는 현재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입법과정에서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함
법무실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처리 결과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 감독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감찰관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허위 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한 내역 및 처리결과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공직자 윤리법 제20조2호, 동법 제14조, 제14조2, 제14조 3호, 제22조 7호, 제28조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국회에만 그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비밀을 엄수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감사·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 단체관광객 입국시 자체심사 기준 및 단체관광객을 불법체류자로 판단하는 심사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외국인의 입국거부 관련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강제퇴거, 출국명령, 출국권고에 따른 입국규제기간 및 그에 따른 법령 및 내부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	입국금지 등 규제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절차는 국민의 권리, 의무의 규정과 관련 없는 국가기관의 내부적 행정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지침이므로 공개 대상이 아니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고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자격 관련 세부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 3, 4, 5호	체류외국인의 감독, 규제에 관한 사항을 공개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음
교정기관	귀휴심사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위원들의 의사결정과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위원들의 원활한 의사결정 발언 등 교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함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 회의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개 시 교정행정업무 수행 곤란 및 급식관리위원의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분류처우 심사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의사결정과정 및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법무실	제48호 사법시험 제3차 시험 위원에 대한 정보 (성명, 근무 직역 기타 신상)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판례에서 평가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취지, 시험제도 보장의 중요성 및 공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음
정책홍보 관리실	1995년 1월 이후부터 2005년 4월까지 3급 이상 퇴직자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 하는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보호국	전국 범죄예방위원의 이름과 직업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보호국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위원명단은 개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이므로 비공개
보호국	약물수강명령 강사 명단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보호국	1988년 이후 가석방, 가퇴원 허가·취소 자료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법 제3조	가석방자 및 가퇴원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식별 가능한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와 청구정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개할 수 없음
교정기관	접견금지자 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타 수용자에 관한 개인 신상정보로써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제한구역 출입 감독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출입자의 구체적인 사유 및 이름 등이 개인신상 정보가 기록되어 있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외부병원 이송자 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청구정보에는 이름, 수번 죄명, 병명 등 개인신상 정보가 포함되어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급식관리위원회 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의 이름 등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타인의 출소증명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출소 증명서는 본인 신청에 의하거나 직계가족(증빙서류 첨부)의 신청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출소증명서는 개개인의 수행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등 개인정보에 해당됨
교정기관	보건의료과장 봉급, 호봉 수당 명세서 및 출근부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타인의 출입국신고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특정인의 출입국관련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출입국 관리기관	과거 초청자의 현 체류지 주소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출입국 관리기관	중국인 ○○○의 사진이 부착된 신상기록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보호국	국회의원 요구자료 문서 및 답변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 4호 및 제6호	범죄 예방, 보안처분 등의 사항 및 개인정보 사항으로 비공개
보호국	비행청소년 대책 관련 선도유예 재범분석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범죄 예방, 보안처분 등의 사항 및 개인정보 사항으로 비공개
교정국	민원인이 법무부에 발송한 민원 서신 조사결과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조사내용에 교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직무수행에 어려 움이 있음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출국금지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출국금지 정보는 출국금지 처분내역 및 범죄사실, 출국금사유와 개인에 대한 인적사항 등이 수록 되어 있고, 그 내용도 수사에 관련된 사항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진행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독거실 사용현황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형의 집행 등에 관한 내용과 개인의 신상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의 현저한 곤란 초래 및 개인의 사생활과 자 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본인에 대한 조사·징벌 의결기록 중 청구인의 진술조서 등을 제외한 문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조사관련 타 수용자의 성명 및 진술, 의견, 판단 등 교정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를 공개하는 경우, 수용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개인의 명예나 인격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정책홍보 관리실	'05년도 국정감사 수감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4, 5, 6호	동 자료는 검찰국 업무와 관련한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과 교정국, 보호국 업무와 관련한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 등에 관한 사항이며 감사·감독·규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복무관계철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교정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를 공개하는 경우, 수용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개인의 명예나 인격 등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간병수용자의 건강진단 검진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공개될 경우 교정행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개인의 신상에 관한 정보로서 비공개 결정함
교정기관	범죄경력조회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개인정보로서 위 정보의 공개가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 침해 및 교정 업무 수행에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2005년 3월 00교도소 1, 2, 3동 하층 영치금 사용신청 및 교부서 (수용자 구매물품 신청 자료 중 개인 신상 자료는 삭제)사본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청구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다른 수용자들의 번호, 이름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를 삭제하고 공개한다고 해도 앞뒤 정황상 식별이 가능하여 다른 수용자들의 개인 신상 및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며 교정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함
교정기관	특별관리대상자 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효율적인 수용관리 및 처우를 위한 내용과 타 수용자에 관한 정보이므로 공개될 경우 개인이 사생활을 침해하고 효율적인 교정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비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향정신성 의약품 투약자 명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공개 시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투약자 명부에는 개인신상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수용자 복지비 지원금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처리에 지장 초래 및 기증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비공개
교정기관	2004년 0월 0일 자살한 수용자 000사건에 대한 기록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사법경찰관리 지정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효율적인 교정업무 수행을 위한 사법경찰관리의 고유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 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수용자 000 등 3명의 00사건으로 처분된 내용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조사 관련 및 타 수용자의 성명 진술, 의견, 판단 등 교정 및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써 이를 공개하는 경우 수용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수 있고, 개인의 명예나 인격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수용자 상담기록부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6호	타 수용자의 인적사항, 상담자의 의견 및 처우기법, 의견개진에 관한 내용으로 공개시 효율적인 교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비공개
교정기관	감사관계철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당해정보에 교정에 관한 사항과 지적받은 공무원의 인적사항이 포 함되어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한 곤란과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법무실	2005, 2006년 현재 교정기관 관련 국가배상 심의회 심의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본부배상심의회 회의록에는 배상 심의회 개최 후 개개의 배상신청 사건의 책임성립여부 및 배상범위에 대한 각 위원의 의견과 신청인의 이름 등을 기록한 문서이며 의사 결정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고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법무실	법무부 국가배상심의회 심의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본부배상심의회 심의자료인 회의록은 배상위원들의 합의 내용을 기록한 문서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및 개인 사생활 침해에 따라 비공개
교정국	최근 3년간 법무부 산하기관 교회사 근무평정 및 서열명부 사본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이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치 료 감호소	약물센터 시공 증빙서류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 결정함
치 료 감호소	부식납품업체 상호 및 업체별 납품 품목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공개 결정함
교정국	1999~2002년까지 교정협회 결산 내역(유사명칭의 장부 내용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 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수용인 구매물품과 접견물 판매 매출액내역서 (2005.1.1-2005.11.30)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 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 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 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수용인 자비부담물품의 판매수익 금과 관련하여 교정협회로 송금한 수익금 총액과 판매 소장에게 배당된 수익금액 및 복지기금 사용내역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 업상의 비밀에 관한사항으로 공 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교도작업 원가 계산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 업상의 비밀에 관한사항으로 공 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 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수용자 자비부담의 공금지정품목 공급가격조정통보와 관련한 2004년 부터 2005년 11월까지 교정 협회 공문서철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 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안경 구매물품 가격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 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 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 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치과보수보철 가격표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 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치과진료업자 및 안경 맞춤업자와의 계약에 관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수용자 신문공급 계약관련철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계약업체의 재산 및 영업 비밀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수용자 자변물품(담요)제품 원가 판매 마진 등에 관한 재무에 관한 사항	법 제9조 제1항 제7호	교정협회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공개
교정기관	계약불이행시 손해배상 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및 제7호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며, 위탁 계약서에는 위탁 업체의 영업 경영에 관한 내용 등 위탁 업체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세부 사항이 기록되어 있어 비공개함
교정기관	직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 및 총괄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7호	교정에 관한 사항과 납품업체 재산의 보호 및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비공개
교정기관	전기온돌 판넬 공사업체 선정 자료, 공사업체의 입찰서류 일체 및 공사비 내역, 작업도면, 시방서, 공사계약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6호 및 제7호	입찰계약, 의사결정과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입찰업체의 개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의약품 입찰내역서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 개인이나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 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자변약품 계약 단가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7호	자변약품의 계약은 입찰관련사항이며, 또한 경영의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며 특히, 청구된 내용이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 3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비공개 요청의 통지를 받아 비공개 결정함
교정기관	2002~2003년도 매점 매입 세금 계산서	법 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당해정보는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과 업체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어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익과 개인의 사생 비밀 또한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교정협회 관련철 일체 및 구매 관련 업체의 계약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교정협회 관련철 일체는 법인, 단체, 개인의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매 관련 업체 계약서에 관한 사항은 개인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및 입찰자의 경영내용, 업무내용, 평가결과 등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결정함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기관	본인의 취업장 작업계약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작업계약과 관련한 계약자의 성명 등 개인 식별 정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하고 영업상 비밀침해 우려
교정기관	소장의 판공비(업무추진비)사용 내역 및 영수증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판공비 내역 및 영수증에는 개인의 신상정보와 법인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 침해 및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수용자 자비물품 공급 계약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계약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 및 영업 이익상의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위탁작업 계약 내용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과 이름·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포함되어 공개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음
교정기관	의무과장이 수용자들에게 허가한 식품, 재활기구, 영양소제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의료법 제19조, 제20조	의무과장이 허가한 식품, 재활기구, 영양소제제에 관한 일괄적인 목록은 비치해 두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병중에 상응한 품목을 허가하여 각 개인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목록을 일괄 공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진료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국	청구인이 2000년 이후 교도소간 이송되었던 이송신청문서 및 이송지휘 명령서 등	법 제9조 제1항 제2, 4, 5호 및 법 제2조, 제3조	2004년도 이송관련 문서는 보존기간 경과 등으로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2004년 이후의 이송 관련 문서는 당해 문서에 개인의 이름, 죄명 등이 포함되어 있고, 형의 집행 또는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시 교정행정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법무실	사법시험답안 채점내역과 채점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법무실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위원회 명단 및 당시 직책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공개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법무실	제48호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회에 대한 정보(성명, 근무 직역 기타 신상)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판례에서 평가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취지, 시험제도 보장의 중요성 및 공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음

## ❁ 비(부분)공개 대상 법령

### ▶ 부분공개

순번	실국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조항	비공개사유
1	교정국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에 의한 국가중요시설이며,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안 목표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교정기관별 수용 인원은 교정시설 관리의 중요한 정보로서 관련 법규의 취지상 보안사항으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와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정시설 방호업무 등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2	교정국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총 58개 조항 중 15개 조항 <비공개 조항 :별지 1 참조>	동 규정에는 수용장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법, 계호방법 및 근무자의 유의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들의 관리 및 적정한 처우에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등 교정 행정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순번	실국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조항	비공개사유
3	교정국	계호근무준칙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총 330개 조항 중 61개 조항 <비공개 조항 :별지 2 참조>	동 규정에는 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호방법, 수용자가 도주하였을 경우의 대처요령, 호송 및 출정에 임하는 경우 총기 등의 휴대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교정행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4	교정국	가석방 업무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가석방 심사기준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가석방심사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5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난민인정 업무 처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2의 라, 마, 3의 다, 라, 마의 (나), 사, 아, 차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 별지 1 >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 비공개조항(총 58개 조항 중 15개 조항)**

번호	비 공개 조 항	비 고
1	제4조(처우상 유의사항)	
2	제8조(번호표 등 표시)	
3	제10조(거실지정)	
4	제12조(담당근무자의 점검사항)	
5	제17조(일일중점시찰대상자 지정)	
6	제21조(동행계호)	
7	제24조(조직폭력사범의 수용)	
8	제26조(상호 연계활동 차단)	
9	제40조(중점관리대상자의 수용)	
10	제32조(거실의 개폐)	
11	제43조(동시 출실금지)	
12	제47조(계구사용자의 운동 등)	
13	제52조(엄중격리대상자 이송 등)	
14	제53조(엄중격리대상자 수용)	
15	제55조(엄중격리대상자 동행계호)	

## &lt; 별지 2 &gt;

## 계호근무준칙 비공개 조항 (총 330 조항 중 비공개 61개 조항)

번호	비 공 개 조 항	번호	비 공 개 조 항
1	제14조 (수용자의 동행)	33	제116조 (근무자의 직무)
2	제17조 (계호장애물 관리)	34	제119조 (근무자의 보고사항)
3	제20조 (비상시의 초동조치)	35	제120조 (도주의심사의 발견시 조치)
4	제23조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자)	36	제124조 (사동근무시 유의사항)
5	제29조 (총기휴대의 자격)	37	제142조 (거실문 개방시 유의사항)
6	제30조 (총기·탄약의 수령 및 휴대)	38	제146조 (인수인계사항)
7	제31조 (총기수수의 제한)	39	제228조 (문제수용자 접견동행 등)
8	제32조 (총기휴대자의 출입제한)	40	제257조 (구외작업 계호인원 등)
9	제33조 (총기탄약의 휴대기준)	41	제258조 (구외작업시 유의사항)
10	제34조 (총기사용시 유의사항)	42	제259조 (도주사고 발생시 조치)
11	제35조 (호송출장시 총기취급)	43	제269조 (근무자 유의사항)
12	제36조 (총기·탄약의 수불)	44	제271조 (출정자 동행시 유의사항)
13	제37조 (보안장비 사용시 유의사항)	45	제272조 (출정감독자 유의사항)
14	제38조 (보안장비의 휴대)	46	제273조 (법정근무자 유의사항)
15	제39조 (보안장비의 수불)	47	제276조 (검사조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16	제54조 (근무자의 직무)	48	제277조 (현장검증근무자 유의사항)
17	제55조 (편성)	49	제278조 (구치감근무자 유의사항)
18	제57조 (휴대장비)	50	제282조 (근무자 준비사항)
19	제77조 (조사근무자 유의사항)	51	제284조 (차량호송시 유의사항)
20	제81조 (거실검사)	52	제285조 (열차 등 호송시 유의사항)
21	제82조 (거실검사 방법)	53	제286조 (도보호송)
22	제83조 (거실검사시 중점 확인사항)	54	제292조 (근무자 유의사항)
23	제84조 (거실검사시 유의사항)	55	제295조 (외부병원 근무시 유의사항)
24	제85조 (작업장 등 검사)	56	제298조 (야간근무 감독자의 직무)
25	제86조 (작업장등 검사시 유의사항)	57	제300조 (야간 보안서무근무자 인계인수사항)
26	제87조 (검사종료 후의 조치)	58	제301조 (야간 보안서무근무시 유의사항)
27	제90조 (정문시정 등)	59	제303조 (순찰근무자 휴대장비)
28	제91조 (정문의 출입)	60	제304조 (순찰근무자 인수인계사항)
29	제96조 (정문근무시 유의사항)	61	제306조 (순찰근무시 유의사항)
30	제102조 (비상시 출입)		
31	제103조 (복수근무)		
32	제110조 (구외통용문 근무시 유의사항)		

▶ 비공개

순번	실국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1	정책홍보 관리실	법무시설 기준 규칙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법무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2	정책홍보 관리실	법무부 소관 국가 정보 자료관리 세 부시행 규칙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규제자 기록관리 등 국가정보관리의 보안성 유지가 필요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3	검찰국	국 제수형자이송 심사위원회 운영 세칙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 세칙도 수형자의 이송(형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
4	보호국	치료감호심의 위원회 운영세칙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5	보호국	치료감호종료·가 종료 및 치료위탁 심사규정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6	보호국	가출소심사규정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7	보호국	보호감호 집행면제 심사규정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8	보호국	가해제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처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개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범죄 예방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

순번	실국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9	보호국	가석방·가퇴원 심사신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개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범죄예방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
10	보호국	보호관찰 필요여부 등 심사절차 및 기준에 관한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개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범죄예방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1	감찰관실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비위철폐 등의 처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2	감찰관실	감찰활동 관리 방안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3	감찰관실	감찰 전산망 관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4	교정국	공안관련사범 수용관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순번	실국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15	교정국	긴급교정사고 발생시 자동조치 사항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자의 도주사고, 자살기도, 화재발생, 집단난동 시 초동조치, 직원비상 배치 및 체포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16	교정국	외부병원 입원 및 진료수용자 등 관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외부병원 입원, 진료중인 수용자(환자)의 도주, 자살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호방법, 계구사용 방법 및 그 관리기법, 근무자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공무원의 행위 등 수용관리 방법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17	교정국	보안장비관리 규정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기, 탄약, 자물쇠 등 기타 보안장비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18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난민인정 협의회 운영세칙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난민인정 관련 업무는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순번	실국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19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체류외국인 관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관리기준,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0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출국금지·정지 관련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1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입국금지 관련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2	출입국 · 외국인 정책본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23	총무과	국내외 공무 출장에 따른 비밀 보안관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4	총무과	법무부 보안업무 내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순번	실국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25	출입국관리기관	대테러 상황반 및 정첩보 접수, 처리 체계 수립 시행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26	출입국관리기관	테러경보 발령 및 대응 세부시행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7	출입국관리기관	2006년도 대테러 활동 세부시행 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8	출입국관리기관	비상 CD 긴급 배포 체계 수립·시행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기타 비공개 사례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교정 기관	교도소별 자변약품(수용자 구매약) 목록 및 가격과 교도소별 약값 산정방식(입찰)	법 제9조 제1항 제5호, 제7호 및 제11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청구 내용에는 입찰 계약 등의 자료와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및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으며, 제3자의 비공개 요청에 의하여 자변약품 목록만 공개함
법무실	2004년도 사법시험 제2차 시험 형사소송법 과목의 응시자 평균 점수 및 대학모의고사 응시생 개별 점수, 대학모의고사 문제, 서울대 등 5개 대학 합격자 수, 청구인의 형사소송법 제1문에 대한 시험위원별 점수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재판중인 사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공개할 경우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외하고, 법무부가 입수하여 이미 공개한 대학 고시반 모의고사 문제는 공개함
법무실	2005년도 사법시험 제1차 시험 시험위원 명단, 예산집행내역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비공개 정보는 공개할 경우 사법시험 정답에 관하여 부당한 시시비비가 제기되고, 우수한 시험위원의 위축이 곤란해지며, 대다수 선의의 수험생들에게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제외하고, 법조인력정책과 예산집행내역 공개함
정책홍보 관리실	근무성적 평정점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8421, 04. 6.11.)	공무원평정규정(대통령령 제18421, '04. 6.11.) 제13조에 의하여 비공개로 분류되어 관리 되고 있는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감찰관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공직자 재산 등록 사항에 대한 심사결과 허위 등록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상당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등록의무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한 내역 및 처리결과 일체	법 제9조 제1항 제5호 및 공직자윤리법 제20조 2호, 동법 제14조, 제14조 2, 제14조 3호, 제22조 7호, 제28조	공직자윤리 위원회는 국회에만 그 실태와 감독 기타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비밀을 엄수 하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감사·감찰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함
법무실	제48호 사법시험 제3차 시험위원에 대한 정보(성명, 근무 직역 기타 신상)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제3차 시험은 면접시험으로 판례에서 평가관련 내용을 비공개로 하고 있는 취지, 시험제도 보장의 중요성 및 공개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사유가 있음
교정기관	의무과장이 수용자들에게 허가한 식품, 재활기구, 영양소제제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및 의료법 제19조, 제20조	의무과장이 허가한 식품, 재활기구, 영양소제제에 관한 일괄적인 목록은 비치해 두고 있지 않으며, 개인의 병증에 상응한 품목을 허가하여 각 개인의 진료기록부에 기록하고 있으므로 목록을 일괄 공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용자의 진료기록부에 기록된 진료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법무실	사법시험답안 채점내역과 채점 기준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실국명	청구정보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법무실	사법시험 제3차 면접시험위원회 명단 및 당시 직책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사법시험법 제18조 제2항	공개시 시험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
치료 감호소	본인 입소 전 정신감정서	피치료감호자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4조 제2항	정신감정서는 의뢰기관에만 공개하게 되어 있으며 개인에게는 비공개함.
치료 감호소	정신감정 의사 성명, 감정된 병명	피치료감호자분류 및 처우관리준칙 제54조 제2항	정신감정서는 의뢰기관에만 공개하게 되어 있으며 개인에게는 비공개함.



## VI. 주요 청구 대상 법령



---

인권이 존중되고  
사회정의가 바로서는 사회

---

- ❁ 공개법령
- ❁ 부분공개 법령
- ❁ 비공개 법령



법무부



## 1. 공개 법령

### ○ 훈 령

순번	부서명	훈 령 명	발령 번호	제(개)정 일 자
1	혁신인사기획관실	법무부 지도방문 조정심의회 운영 규칙	134	1983. 3.18.
2	혁신인사기획관실	법무부 소속 별정직공무원 근무상한 연령에 관한 규정	409	1999. 7. 1.
3	혁신인사기획관실	민원담당공무원 수당지급 규칙 중개정령	505	2004.12.13.
4	혁신인사기획관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임용권 및 임용시험 실시권 위임 규칙	513	2005. 3.14.
5	혁신인사기획관실	법무부 정책위원회 규정	527	2005. 9. 1.
6	혁신인사기획관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보직관리기준 개정	529	2005. 9.22.
7	혁신인사기획관실	법무부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532	2005.10.14.
8	혁신인사기획관실	법무부 보고사무 처리지침	554	2006. 6. 9.
9	혁신인사기획관실	법무부 위임전결 규정	563	2006. 7.27.
10	혁신인사기획관실	법무부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칙	568	2006.11. 2.
11	시설관리담당관실	시설 공사 검사 업무 규칙	303	1994. 4.25.
12	시설관리담당관실	법무시설 건축협의회 규정	391	1998. 3.31.
13	시설관리담당관실	공사 감독자 업무 규정	472	2002.12. 9.
14	여성정책담당관실	법무부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규정	521	2005. 7.27.
15	정보화담당관실	법무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 규정	444	2001. 5.24.
16	정보화담당관실	법무부 정보화 업무 기본 지침	534	2005.12. 7.
17	성과관리팀	법무부 자체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550	2006. 5.29.
18	송무과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자세에 관한 규정	190	1983.12.31.
19	송무과	송무수행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386	2005.12.26.
20	송무과	국가소송 사건 수임번호사 보수 규정	439	2005.12.26.
21	검찰과	검사 장기해외 파견심사위원회 규정	410	1998. 8.11.
22	검찰과	검찰 통계사무 규정	479	2003. 4.28.

순번	부서명	훈령명	발령번호	제(개)정일자
23	검찰과	참고인 등 비용 지급 규칙	528	2005. 9.13.
24	형사기획과	인권보호 수사 준칙	556	2006. 7. 1.
25	공공형사과	개성공업지구 및 금강산관광지구에서 발생한 형사 사건 처리지침	512	2005. 3.14.
26	공공형사과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543	2006. 3.13.
27	보호과	치료감호소 직원 급여품 규칙	198	1987.10.20.
28	보호과	치료감호소 의류 및 침구제식 규칙	199	1987.10.20.
29	보호과	치료감호소 주부식 급여 규칙	356	1995.12.30.
30	보호과	소년 선도 보호 지침	373	1997. 1. 3.
31	보호과	치료감호소 병원명칭 병행사용에 따른 지침 시달	385	1997.11.10.
32	보호과	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 규정	443	2001. 3.14.
33	보호과	법 교육 연구위원회 규정	509	2005. 3.10.
34	보호과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 준칙	555	2006. 6.14.
35	관찰과	보호관찰기관 당직근무 지침	300	1994. 3. 1.
36	관찰과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규정	365	1996. 7. 6.
37	관찰과	보호관찰 대상자 지명수배 절차에 관한 규칙	566	2006.10.19.
38	소년제1과	보도관 급여품 규칙	325	1995. 4. 6.
39	소년제1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취사원 고용 규칙	327	1995. 4. 6.
40	소년제1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차량관리 규칙	329	1995. 4. 6.
41	소년제1과	교재연구수당 지급 규칙	357	1996. 1. 3.
42	소년제1과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당직근무 등에 관한 지침	557	2006. 6.29.
43	소년제1과	소년보호 교육기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지침	558	2006. 6.29.
44	소년제2과	보호소년 취업 및 사후정착지도 전담부서 운영지침	418	2002. 2.14.
45	소년제2과	서울소년창업보육원 운영 지침	470	2002.10. 9.
46	소년제2과	보호소년 수용 지침	523	2005. 8.18.
47	소년제2과	소년원의 명칭복수화 사용에 관한 지침	525	2005. 8.18.

순번	부서명	훈령명	발령번호	제(개)정일자
48	소년제2과	소년원 특성화(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539	2006. 3. 2.
50	소년제2과	보호소년 지도위원 기본 규정	559	2006. 7. 5.
51	감찰기획관실	검사 윤리 강령	404	1998.12.29.
52	감찰기획관실	감찰사실 공표에 관한 지침	553	2006. 6.12.
53	감찰기획관실	공직자 등록재산조사단 운영 규정	519	2005. 6.18.
54	감찰기획관실	법무·검찰공무원의 부조리 신고 등에 관한 보상 및 포상 지침	535	2005.12. 8.
55	감찰기획관실	법무부 감찰 규정	530	2005. 9.26.
56	감찰기획관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운영 세칙	518	2005. 6.22.
57	인권정책과	인권옹호 단체 감독 규정	136	1969. 7.21.
58	구조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587	2006. 5.24.
59	구조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 운영 세칙	552	2006. 6. 2.
60	교정기획과	교도관 예절에 관한 규칙	464	2002. 6.17.
61	교정기획과	교정의 날 규칙	526	2005. 9. 1.
62	교정기획과	교정행정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546	2006. 4.12.
63	교정기획과	교정행정 정보화 업무지침	514	2005. 3.18.
64	교정기획과	민영교도소 등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449	2001.12.21.
65	교정기획과	수용자 자비부담 물품의 공급에 관한 규칙	460	2002. 4. 1.
66	보안관리과	미결수용자 사복착용에 관한 규칙	407	1999. 3.17.
67	보안경비과	교정시설 경비교도대 운영 규칙	428	2000.10.26.
68	교육교화과	수용자 열람도서 관리 규정	440	2001. 2. 4.
69	교육교화과	수용자 집필제도 운영 지침	454	2002. 1.28.
70	교육교화과	수용자 등 교육규칙	558	2004.11.22.
71	복지지원과	교도관 급여품 및 대여품 규칙	342	1995.11. 3.
72	복지지원과	교도소 차량관리 규칙	180	1987. 1.20.
73	복지지원과	수용자 건강진단 규칙	463	2002. 5.17.

순번	부서명	훈령명	발령번호	제(개)정일자
74	복지지원과, 보호과, 조사집행과	교도소와 소년원 및 외국인보호소 등 의무관 임상연구비 지급규칙	542	2006. 3.10.
75	체류정책과	출입국관리 공무원 금여품 및 대여품 규칙	181	1987. 1.20.
76	체류정책과	출입국관리 기 규정	219	1989. 5.29.
77	체류정책과	법무부 이민행정협의회 규정	501	2004. 6.29.
78	체류정책과	불법체류 외국인대책협의회 규정	508	2005. 3. 2.
79	출국관리과	남북한 왕래자에 대한 출입(국) 심사지침	536	2006. 1. 1.
80	출입국심사과	해상밀입국 방지대책위원회 규정	382	1997. 9. 4.
81	출입국심사과	외국국적 동포에 대한 단기종합(C-3)사증 발급 등에 관한 지침	504	2004.11. 2.
82	출입국심사과	APEC 경제인 여행카드의 발급 및 관리 규정	531	2005.10. 4.
83	출입국심사과	해외투자기업 산업연수생 등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지침	533	2005.11.30.
84	조사집행과	외국인 보호규칙 시행 세칙	541	2006. 3.10.
85	조사집행과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 협의회 규정	548	2006. 4.18.
86	감사담당관실	골프 및 사행성 오락관련 법무부 공무원 행위기준	551	2006. 5.30.
87	감사담당관실	법무부 자체감사 규정	403	1998.10.30.
88	감사담당관실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538	2006. 1.17.
89	총무과	법무부 기에 관한 규정	446	2001. 7. 7.
90	총무과	법무부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규정	480	2003. 5.15.
91	총무과	법무부 소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임명권 위임에 관한 규정	484	2003. 6.10.
92	총무과	법무부 자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517	2005. 6.17.

○ 예 규

순번	부서명	예 규 명	발령 번호	제(개)정 일 자
1	비상계획관실	민방위 경보발령·전달 규정	708	2004. 8. 7.
2	혁신인사기획관실	고소·고발 관련민원 실질적 해소방안 시행지침	527	2000. 1.12.
3	혁신인사기획관실	별정 직(직업훈련교사)공무원 임용예규	654	2003. 2.17.
4	혁신인사기획관실	법무부 개방형 직위선발 시험위원회 운영규정	727	2005. 6.13.
5	혁신인사기획관실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운영 규정	738	2005.11. 1.
6	재정기획관실	법무연감 발간규정	359	1991.10.19.
7	시설관리담당관실	법무시설 조성추진에 따른 업무지침	413	1994.12. 7.
8	법무과	공증사무 이의신청 사건처리 지침	667	2003. 7. 4.
9	법무심의관실	법무부 예규 등 제정·개정 절차 및 정비지침	661	2003. 4.25.
10	송무과	국가배상금 지급사무 일부이양 및 업무처리 지침 시달	203	1975. 4. 8.
11	송무과	망실 국유재산 현황 보고	224	2005.12.26.
12	송무과	국가 및 행협배상 업무처리 지침	549	2006. 1.27.
13	송무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업무처리 지침	550	2001. 4.10.
14	송무과	협정 비공무사건 사전지급업무 처리지침	671	2005.12.26.
15	법조인력정책과	사법시험 및 군법무관임용시험 응시원서 서식	737	2005.11.16.
16	형사기획과	몰수품 중 합금 등의 처분에 관한 지시	292	1985. 5.28.
17	형사기획과	압수 및 몰수선박 처리	399	2006. 1.10
18	형사기획과	특별사법경찰관리지명 절차 등에 관한 지침	685	2003.12.24.
19	보호과	치료감호소 자문위원회 규정	388	1994. 6. 4.
20	소년제1과	소년원 업무연구 및 연구수업 시행지침	176	1973. 4.16.
21	소년제2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646	2002. 8.30.
22	교정기획과	3부제 근무운영지침	348	2006. 1.25.
23	교정기획과	교정제안제도 활성화 세부추진계획 시달	405	1994.11.23.
24	교정기획과	순회점검반 운영규정	454	1997. 4. 9.
25	교정기획과	교도관 기장 패용 요령	614	2002. 5.14.
26	교정기획과	교정시설 간판게시 및 교정기구 영문 표기 지침	615	2002. 5.14.

순번	부서명	예 규 명	발령 번호	제(개)정 일 자
27	교정기획과	현황작성 및 보고요령 지침	617	2002. 5.14.
28	교정기획과	중번순찰제 운영규칙	619	2002. 5.14.
29	교정기획과	직원개인용 통신장비 관리 및 휴대에 관한 지침	620	2002. 5.14.
30	교정기획과	교정사고 유형별 문책기준	621	2002. 5.14.
31	교정기획과	보고체계 확립에 관한 지침	622	2002. 5.14.
32	교정기획과	비상소집태세 확립지침	645	2002. 8.13.
33	교정기획과	교정공무원 상호부조회 규정	716	2004.12.15.
34	교정기획과	교정관련 영화방송드라마 제작지원 지침	722	2005. 1. 4.
35	교정기획과	교정위원제도 운영지침	728	2005. 6.17.
36	교정기획과	휴가일수 계산 자체기준	739	2005.12. 1.
37	교정기획과	교정직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	741	2006. 1.11.
38	교정기획과	교정직제의 영문표기 및 사용에 관한 지침	746	2006. 2. 4.
39	교정기획과	교정시설 성폭력 감시단 운영 규정	749	2006. 4. 5.
40	보안관리과	수형자 자치제 시행지침	506	1998.12.26.
41	보안관리과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에 관한 지침	542	2005. 1. 3.
42	보안관리과	노역수형자 관리지침	569	2002. 1.21.
43	보안관리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업무처리 지침	583	2002. 2.15.
44	보안관리과	수용자 청원처리 지침	597	2002. 5. 4.
45	보안관리과	외국인 수용자 처우지침	598	2002. 5. 4.
46	보안관리과	소년수용자 관리지침	607	2002. 5. 9.
47	보안관리과	수용자 이발 등 지침	610	2002. 5.13.
48	보안관리과	교정시설 참관지침	611	2002. 5.13.
49	보안관리과	신입수용안내 및 신입식 예방지침	631	2002. 5.17.
50	보안관리과	관용부요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670	2001. 3.26.
51	보안관리과	수용자 접견업무 지침	732	2005. 8.22.
52	보안관리과	수형자 개방처우 지침	736	2005.11. 1.
53	보안경비과	선거사범 수용처우지침	582	1992. 2.18.
54	보안경비과	경비교도대 운영 관리지침	591	2002. 4.15.

순번	부서명	예 규 명	발령 번호	제(개)정 일 자
55	보안경비과	교정 시민옴부즈만 운영규정	750	2006. 4.13.
56	작업훈련과	교정작품전시회 출품작 심사규칙	575	2002. 1.25.
57	작업훈련과	미결수용자 평상복 제식규정	606	2002. 5. 6.
58	작업훈련과	수용자 직업능력개발훈련규정	668	2003. 8. 1.
59	작업훈련과	교도작업제품 자체구매 규정	675	2003.10. 7.
60	작업훈련과	교도작업제품 검사 규정	676	2003.10. 7.
61	작업훈련과	교도작업제품 평가위원회 운영 규정	677	2003.10. 7.
62	작업훈련과	교도작업 제안 규정	678	2003.10. 7.
63	작업훈련과	작업중 안전관리 규정	679	2003.10. 7.
64	작업훈련과	교도작업제품 전시관 운영규정	687	2003.12.29.
65	작업훈련과	위탁작업 운영규정	688	2003.12.29.
66	작업훈련과	교도작업특별회계 사무처리규정	691	2003.12.29.
67	작업훈련과	구외공장 통근작업 운영규정	734	2005. 8.31.
68	작업훈련과	외부통근작업 운영규정	735	2005. 8.31.
69	작업훈련과	수용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규정	743	2006. 1.26.
70	작업훈련과	피보호감호자 조위금 및 위로금 지급규정	744	2006. 1.26.
71	작업훈련과	교도작업 운영규정	747	2006. 3.24.
72	작업훈련과	수용자 작업상여금 지급규정	748	2006. 3.28.
73	작업훈련과	교정자산관리 규정	758	2006. 8.14.
74	작업훈련과	피보호감호자 근로보상금 지급규정	759	2006. 9. 1.
75	교육교화과	수용자 예능 및 체능활동지침	572	2002. 1.25.
76	교육교화과	수용자 교화방송 지침	574	2002. 1.25.
77	교육교화과	수용자 신앙생활에 관한 지침	577	2002. 1.25.
78	교육교화과	수용자 정신교육 지침	581	2002. 2. 1.
79	교육교화과	수용자 교회 및 복지활동 지침	587	2002. 3.10.
80	교육교화과	수용자 정보화교육 규정	669	2003. 8. 1.
81	교육교화과	수용자 가족만남의 날 행사지침	672	2003. 9. 1.
82	교육교화과	가족만남의 집 운영지침	674	2003.10.6.
83	교육교화과	수용자 서신업무 처리지침	707	2004. 8. 9.

순번	부서명	예 규 명	발령 번호	제(개)정 일 자
84	교육교화과	수용자 신문열람 지침	740	2005.12. 8.
85	교육교화과	수형자 정보화교육 규정	757	2006. 6.15.
86	복지지원과	비상대기숙소 관리 규정	447	1995.12.27.
87	복지지원과	수용자 의약품 관리 규정	565	2001.12.21.
88	복지지원과	수용자 생활용품 급여 지침	584	2002. 2.22.
89	복지지원과	수용자 의료관리 지침	625	2002. 5.17.
90	복지지원과	교도관·경비교도 급양관리 지침	626	2002. 5.17.
91	복지지원과	수용자 급양관리 지침	627	2002. 5.17.
92	복지지원과	수용자 피복관리 및 제작에 관한 지침	628	2002. 5.17.
93	복지지원과	수용자 피복류 수급·운용에 관한 지침	629	2002. 5.17.
94	복지지원과	영치금품 관리규정	705	2004. 7. 3.
95	국적난민과	국적업무출장소 운영지침	453	1997. 3.20.
96	국적난민과	명예국민증 수여에 관한 규정	640	2002. 6.25.
97	국적난민과	외국국적동포의 국적회복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729	2005. 6.20.
98	국적난민과	국적업무 처리지침	752	2006. 6.19.
99	총무과	법무부 직장동호회운동 지침	541	2006. 1.26.
100	총무과	법무부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663	2003. 6.10.
101	총무과	물품구매입찰 적격심사 세부심사기준	663	2003. 6.10.
102	총무과	법무행정 기록물관리 강화 지침	709	2004.10.18.
103	총무과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751	2006. 6.13.

## ○ 지시·지침, 고시

순번	부서명	종류	법령명
1	재정기획관실	지시·지침	2006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
2	재정기획관실	지시·지침	법무부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3	시설관리담당관실	지시·지침	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4	시설관리담당관실	지시·지침	기술용역(설계·감리)적격심사 세부기준
5	시설관리담당관실	지시·지침	법무시설공사 검사업무규칙
6	시설관리담당관실	지시·지침	법무시설조성사업 건설폐기물관리지침
7	시설관리담당관실	지시·지침	설계용역업체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8	정보화담당관실	지시·지침	법무부 홈페이지 운영지침
9	관찰과	지시·지침	구인된 보호관찰대상자 호송 중 가유치 등 활용에 관한 지시
10	관찰과	지시·지침	구인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관련 공문
11	관찰과	지시·지침	군법피적용자에 대한 보호관찰실시 지침
12	관찰과	지시·지침	기소유예 처분된 성구매자 교육실시에 관한 지침
13	관찰과	지시·지침	범죄예방 자원봉사 기본규정
14	관찰과	지시·지침	범죄예방위원 활용 등에 관한 지침
15	관찰과	지시·지침	보호관찰 사안조사 실시 세부지침
16	관찰과	지시·지침	보호관찰 신고서 서식 개정
17	관찰과	지시·지침	보호관찰소 선도위탁규정
18	관찰과	지시·지침	보호관찰심사위원회 운영세칙
19	관찰과	지시·지침	분할, 야간, 주말 등 사회봉사명령 탄력집행 활성화 방안 지시
20	관찰과	지시·지침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준칙
21	관찰과	지시·지침	사회봉사명령 집행감독 강화방안 시달
22	관찰과	지시·지침	사회봉사명령 화상전화감독 실시 지침
23	관찰과	지시·지침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상해보험 관련 업무 처리 지침
24	관찰과	지시·지침	상소제기 보호관찰사건에 대한 관리방안 시달

순번	부서명	종류	법령명
25	관찰과	지시·지침	성매매사범 보호관찰 지침
26	관찰과	지시·지침	성매매사범 수강명령 프로그램 시달
27	관찰과	지시·지침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세부추진 계획
28	관찰과	지시·지침	신중검토자에 대한 보호관찰 사안조사 강화방안
29	관찰과	지시·지침	약용남용사범 관리 방안
30	관찰과	지시·지침	외출제한명령 실시에 관한 지침
31	관찰과	지시·지침	재범방지 강화를 위한 보호관찰업무 추진관련 지시
32	관찰과	지시·지침	특별관리대상자 관리 방안
33	국적난민과	지시·지침	국적회복신청 중국 동포1세 사망시 동반가족 처리지침
34	출입국심사과	지시·지침	외국인출국정지 업무 처리지침
35	출입국심사과	지시·지침	출국금지업무처리지침
36	체류정책과	고시	이중국적자 업무처리 지침
37	체류정책과	고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

## 2. 부분공개 법령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 근거	비공개 조항	비공개 사유
1	보안관리과	전국 교정시설 수용구분 등에 관한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별표	교정시설은 ‘통합방위법’에 의한 국가 중요시설이며, ‘국가보안목표관리지침’에 따라 국가보안 목표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교정기관별 수용 인원은 교정시설 관리의 중요한 정보로서 관련 범규의 취지상 보안사항으로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와 형의 집행 교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정시설 방호업무 등 그 직무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2	보안관리과	특별관리 대상자 관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총 58개 조항 중 15개 조항 <비공개 조항 :별지 1 참조>	동 규정에는 수용장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기법, 계호방법 및 근무자의 유의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수용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들의 관리 및 적절한 처우에 구체적인 장애를 초래하게 되는 등 교정행정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3	보안관리과	계호근무준칙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총 330개 조항 중 61개 조항 <비공개 조항 :별지 2 참조>	동 규정에는 수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계호방법, 수용자가 도주하였을 경우의 대처요령, 호송 및 출정에 임하는 경우 총기 등의 휴대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수용자들의 관리 및 질서유지, 수용시설의 안전 등에 관한 교정행정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순 번	부서명	법 령 명	비공개 근 거	비공개 조 항	비공개 사유
4	보 안 관리과	가석방 업무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제9조 및 별표 1	가석방 심사기준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공개할 경우 가석방심사의 공정성을 침 해할 우려가 있음
5	국 적 난민과	난민인정 업무 처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2의 라, 마, 3의 다, 라, 마의 (나), 사, 아, 차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음

## &lt; 별지 1 &gt;

## 특별관리대상자관리지침 비공개조항(총 58개 조항 중 15개 조항)

번호	비 공개 조 항	비 고
1	제4조(처우상 유의사항)	
2	제8조(번호표 등 표시)	
3	제10조(거실지정)	
4	제12조(담당근무자의 점검사항)	
5	제17조(일일중점시찰대상자 지정)	
6	제21조(동행계호)	
7	제24조(조직폭력사범의 수용)	
8	제26조(상호 연계활동 차단)	
9	제40조(중점관리대상자의 수용)	
10	제32조(거실의 개폐)	
11	제43조(동시 출실금지)	
12	제47조(계구사용자의 운동 등)	
13	제52조(엄중격리대상자 이송 등)	
14	제53조(엄중격리대상자 수용)	
15	제55조(엄중격리대상자 동행계호)	

< 별지 2 >

**계호근무준칙 비공개 조항 (총 330 조항 중 비공개 61개 조항)**

번호	비 공 개 조 항	번호	비 공 개 조 항
1	제14조 (수용자의 동행)	33	제116조 (근무자의 직무)
2	제17조 (계호장애물 관리)	34	제119조 (근무자의 보고사항)
3	제20조 (비상시의 초동조치)	35	제120조 (도주의심사의 발견시 조치)
4	제23조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자)	36	제124조 (사동근무시 유의사항)
5	제29조 (총기휴대의 자격)	37	제142조 (거실문 개방시 유의사항)
6	제30조 (총기·탄약의 수령 및 휴대)	38	제146조 (인수인계사항)
7	제31조 (총기수수의 제한)	39	제228조 (문제수용자 접견동행 등)
8	제32조 (총기휴대자의 출입제한)	40	제257조 (구외작업 계호인원 등)
9	제33조 (총기탄약의 휴대기준)	41	제258조 (구외작업시 유의사항)
10	제34조 (총기사용시 유의사항)	42	제259조 (도주사고 발생시 조치)
11	제35조 (호송출장시 총기취급)	43	제269조 (근무자 유의사항)
12	제36조 (총기·탄약의 수불)	44	제271조 (출정자 동행시 유의사항)
13	제37조 (보안장비 사용시 유의사항)	45	제272조 (출정감독자 유의사항)
14	제38조 (보안장비의 휴대)	46	제273조 (법정근무자 유의사항)
15	제39조 (보안장비의 수불)	47	제276조 (검사조사실 근무자 유의사항)
16	제54조 (근무자의 직무)	48	제277조 (현장검증근무자 유의사항)
17	제55조 (편성)	49	제278조 (구치감근무자 유의사항)
18	제57조 (휴대장비)	50	제282조 (근무자 준비사항)
19	제77조 (조사근무자 유의사항)	51	제284조 (차량호송시 유의사항)
20	제81조 (거실검사)	52	제285조 (열차 등 호송시 유의사항)
21	제82조 (거실검사 방법)	53	제286조 (도보호송)
22	제83조 (거실검사시 중점 확인사항)	54	제292조 (근무자 유의사항)
23	제84조 (거실검사시 유의사항)	55	제295조 (외부병원 근무시 유의사항)
24	제85조 (작업장 등 검사)	56	제298조 (야간근무 감독자의 직무)
25	제86조 (작업장등 검사시 유의사항)	57	제300조 (야간 보안서무근무자 인계인수사항)
26	제87조 (검사종료 후의 조치)	58	제301조 (야간 보안서무근무시 유의사항)
27	제90조 (정문시정 등)	59	제303조 (순찰근무자 휴대장비)
28	제91조 (정문의 출입)	60	제304조 (순찰근무자 인수인계사항)
29	제96조 (정문근무시 유의사항)	61	제306조 (순찰근무시 유의사항)
30	제102조 (비상시 출입)		
31	제103조 (복수근무)		
32	제110조 (구외통용문 근무시 유의사항)		

### 3. 비공개 법령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 근거	비공개 사유
1	시설관리 담당관실	법무시설 기준 규칙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법무시설 방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음
2	정보화 담당관실	법무부 소관 국가정보 자료 관리 세부시행 규칙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출입국규제자 기록관리 등 국가정보관리의 보안성 유지가 필요하며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3	국제형사과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 세칙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국제수형자이송심사위원회 운영 세칙도 수형자의 이송(형집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이 현저히 곤란
4	보호과	치료감호심의 위원회 운영세칙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5	보호과	치료감호종료·가종료 및 치료 위탁 심사규정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6	보호과	가출소 심사규정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7	보호과	보호감호 집행면제 심사규정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8	관찰과	가해제 신청 및 심사 등에 관한 처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개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범죄 예방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 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
9	관찰과	가석방·가퇴원 심사신청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개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범죄예방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이유가 있는 정보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10	관찰과	보호관찰 필요 여부 등 심사절차 및 기준에 관한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	공개될 경우 보호관찰관의 범죄예방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며 보호관찰대상자 지도, 감독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1	감찰관실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진정·비위 첩보 등의 처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2	감찰관실	감찰활동 관리 방안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3	감찰관실	감찰 전산망 관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14	보안관리과	공안관련사범 수용관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개될 경우 그 업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15	보안관리과	긴급교정사고 발생시 자동조치 사항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자의 도주사고, 자살기도, 화재발생, 집단난동 시 초동조치, 직원비상 배치 및 체포활동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수용자들이 교정공무원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16	보안관리과	외부병원 입원 및 진료수용자 등 관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외부병원 입원, 진료중인 수용자(환자)의 도주, 자살 등 교정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호방법, 계구사용 방법 및 그 관리기법, 근무자 근무수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교정공무원의 행위 등 수용관리 방법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 도주 등 교정사고 발생시 효율적인 대처를 할 수 없게 되는 등 교정업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17	보안경비과	보안장비관리 규정	법 제9조 제1항 제4호	교정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총기, 탄약, 자물쇠 등 기타 보안장비에 대한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18	국적난민과	난민인정협의회 운영세칙	법 제9조 제1항 제2호	난민인정 관련 업무는 국가안정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9	체류정책과	체류외국인 관리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관리기준, 체류기간연장, 재입국허가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에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20	출입국심사과	출국금지·정지 관련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1	출입국심사과	입국금지 관련 자료	법 제9조 제1항 제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순번	부서명	법령명	비공개근거	비공개사유
22	출입국심사과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2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기준 및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어, 이를 공개할 경우 외국인의 불법입국기도 및 허위초청의 수단으로 이용되어 외국인의 입국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23	총무과	국내외 공무 출장에 따른 비밀보안관리 지침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4	총무과	법무부 보안업무내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5	출입국관리기관	대테러 상황반 및 정첩보 접수, 처리체계 수립 시행	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
26	출입국관리기관	테러경보 발령 및 대응 세부시행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7	출입국관리기관	2006년도 대테러 활동 세부시행계획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8	출입국관리기관	비상 CD 긴급 배포 체계 수립·시행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 참고 자료 】

1. 법무부 부서별 담당업무 및 연락처
2. 정보공개 관련법령
3.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법무부 예규 제751호, '06. 4.)
  -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별첨 1)
  - 비공개 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별첨 2)
4. 각종 정보공개 관련서식
5. 수수료 산정 기준표
6.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  
법무부가 만들어 가겠습니다.



# 1. 법무부 부서별 담당업무 및 연락처

## ❁ 정책홍보관리관실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홍보관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 및 협의, 지원</li> <li>법무정책과 관련된 각종 정보 및 상황관리</li> <li>보도내용의 확인 등 홍보사무에 관한 사항</li> </ul>	(02) 503-7011~2  FAX) 504-5723
비상계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정부비상훈련</li> <li>직장예비군·민방위대의 관리</li> <li>기타 비상계획에 관련되는 사항</li> </ul>	(02) 503-7024~5  FAX) 503-7025
혁신인사 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업무처리절차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부내 행정 혁신의 총괄, 지원</li> <li>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사무</li> <li>직무성과계약제 운영</li> <li>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li> <li>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 집행</li> <li>민원(국민제안 포함)관련 제도 개선</li> <li>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등</li> <li>행정관리조사와 행정통계의 작성, 분석</li> <li>자체제안제도의 운영</li> <li>보고심사 및 관리</li> </ul>	(02) 2110-3104~5  FAX) 2110-3499
재정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li> <li>기타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02) 503-7026~7  FAX) 503-1641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시설관리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시설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li> <li>▪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li> <li>▪ 법무시설 설계 및 시공의 검사에 관한 사항</li> <li>▪ 법무시설공사시공계획의 수립·시행</li> <li>▪ 법무시설공사의 기술지도 및 감독</li> <li>▪ 법무시설보수계획의 수립·시행</li> <li>▪ 기타 법무시설관리업무로서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02) 503-7092~4 FAX) 503-7077</p>
정보화 담당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행정정보화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시행</li> <li>▪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화업무의 지원·조정 및 감독</li> <li>▪ 정보화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작성</li> <li>▪ 정보화관련 제도개선 및 정보통신 보안활동</li> <li>▪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정보화자원 (하드웨어·소프트웨어)의 수급·관리</li> <li>▪ 전자문서의 유통 및 정보화자료 구축·보호</li> <li>▪ 인터넷 및 정보통신망의 운용·관리</li> <li>▪ 정보화관련 교육 및 전산관련 일반행정</li> </ul>	<p>(02) 503-7091 FAX) 503-7113</p>
성과관리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업무평가</li> <li>▪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운영</li> <li>▪ 대통령지시사항 및 공약사항 관리</li> <li>▪ 정책품질관리제도 운영</li> <li>▪ 정부업무관리시스템 운영</li> <li>▪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li> <li>▪ 정보사업 심사분석</li> </ul>	<p>(02) 2110-3031 FAX) 503-0320</p>
고객만족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원사무의 총괄·조정 및 통제</li> <li>▪ 민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li> <li>▪ 고객만족 향상 등을 위한 계획의 수립·시행</li> <li>▪ 민원서 접수·분류 및 민원상담 업무</li> <li>▪ 규제개혁 및 갈등관리 업무</li> <li>▪ 국민제안제도의 운영 등</li> </ul>	<p>(02) 2110-3304-5 FAX) 502-9464</p>

## ❁ 법 무 실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법무심의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종합 및 조정</li> <li>▪ 법령 안의 기초 및 심사</li> <li>▪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과 민사·상사·형사(다른 법령의 벌칙조항을 포함한다)·행정소송 및 국가 배상관계법령의 해석</li> <li>▪ 법무부 관련 법령의 해석</li> <li>▪ 법무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li> <li>▪ 법무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연구·개선</li> <li>▪ 민사관계법령의 연구</li> <li>▪ 법무자문위원회의 운영</li> <li>▪ 도서관리</li> </ul>	<p>(02) 503-7034~5 FAX) 503-7037</p>
법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 및 변호사 단체에 관한 사항</li> <li>▪ 공증인·법무법인 및 공증인가 합동 법률 사무소에 관한 사항</li> <li>▪ 법무연수원의 감독</li> <li>▪ 법무부소관 단체(그 목적과 사업내용이 다른 과·담당관의 소관에 속하는 단체를 제외)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02) 507-6523 FAX) 503-0135</p>
국제법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상관계 법률자문</li> <li>▪ 조약 등 국제협력의 국내적 시행에 관련된 법률문제의 검토에 관한 사항</li> <li>▪ 국제 사법공조(국제 형사 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사항</li> <li>▪ 해외동포에 대한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법무에 관한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li> <li>▪ 법무(형사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li> <li>▪ 법무협력관 관련업무 및 법무에 관한 국외의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li> <li>▪ 포획심판소에 관한 사항</li> <li>▪ 기타 국제 법무관계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02) 503-9505~6 FAX) 504-1378</p>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송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송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지휘·감독</li> <li>▪ 행정소송의 수행 및 지휘·감독</li> <li>▪ 소송총괄관의 지휘·감독</li> <li>▪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 및 비송사건의 지휘 감독</li> <li>▪ 법무부소관 행정심판의 처리</li> <li>▪ 본부배상심의회의 운영 및 그 소속지구배상 심의회의 지휘·감독 특별배상심의회 및 그 소속지구배상심의회의 지휘·감독</li> <li>▪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한 배상 등에 관한 사항</li> <li>▪ 헌법재판의 수행</li> <li>▪ 행정 각부처의 헌법재판사무에 관한 법률적 자문</li> <li>▪ 헌법재판과 관련한 헌법제도의 연구</li> <li>▪ 헌법재판과 관련한 자료의 조사·수집 및 간행</li> </ul>	<p>(02) 503-7039~40</p> <p>FAX) 504-1379</p>
특수법령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북한 통일관련 중·장기 법무계획의 수립·추진</li> <li>▪ 남·북한 통일관련 법무관계 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li> <li>▪ 대통령·국무총리와 행정 각부처의 통일관련 법령에 관한 자문</li> <li>▪ 남·북한 교류협력관련 법무관계 법령의 해석</li> <li>▪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에 따른 법적분쟁 조절을 위한 대비계획의 종합·조정</li> <li>▪ 북한의 법률 체계 및 사법제도에 관한 실태 파악 및 분석평가</li> <li>▪ 통일관련 외국법령의 조사·수집·연구 및 간행</li> <li>▪ 기타 통일관련 법무사무에 있어서 실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02) 507-0314~5</p> <p>FAX) 507-0315</p>
법조인력 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간 시험계획 수립·공고</li> <li>▪ 사법시험 출제, 송무, 채점 등 관리</li> <li>▪ 군법무관시험 출제, 송무, 채점 등 관리</li> <li>▪ 각종증명서 발급 등</li> </ul>	<p>(02) 507-0485</p> <p>FAX) 507-0486</p>

❁ **검찰국**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p>검찰과</p>	<p><b>검찰행정담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공무원의 배치 및 복무 감독</li> <li>▪ 검찰공무원의 국내외 교육훈련</li> </ul> <p><b>검찰조직담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운영계획 및 심사분석</li> <li>▪ 검찰행정(인사·조직등)관계법령의 입안</li> <li>▪ 검찰청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li> </ul> <p><b>검찰예산 담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찰예산의 편성 및 재배정에 관한 자료작성</li> <li>▪ 검찰청사·관사·장비의 수급계획 및 유지 보수</li> </ul>	<p>(02) 503-7047-8 FAX) 3480-3089</p>
<p>형사기획과</p>	<p><b>법령입안 담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관계특별법령의 입안</li> </ul> <p><b>수사지휘·정보담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사건의 수사 지휘</li> <li>▪ 형사사건의 구속수사 승인·사건 지휘·감독</li> <li>▪ 형사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li> <li>▪ 형사사건에 관한 범죄정보의 수집·분석</li> </ul> <p><b>사건처리 담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면·감형·복권</li> <li>▪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li> <li>▪ 범죄피해구조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li> <li>▪ 마약류보상금지급의 심의 및 결정</li> <li>▪ 범죄없는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p>(02) 503-7052~3 FAX) 3480-3099</p>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공공형사과	<p><b>공안일반 사무 담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안행정의 종합계획</li> <li>▪ 공안관계법령의 입안</li> <li>▪ 국가보안 유공자 상금·보로금 또는 원호 청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심사결정 통지</li> <li>▪ 국가보안유공자 관련 업무</li> </ul> <p><b>공안수사 사무담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안사건의 수사지휘</li> <li>▪ 공안범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li> </ul> <p><b>보안관찰처분 사무담당</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관찰법운영의 기본계획수립</li> <li>▪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 및 집행지휘</li> </ul>	<p>(02) 503-7055~6  FAX) 3480-3555</p>
국제형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형사관계 법령·조약의 입안</li> <li>▪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형사재판권에 관한 사항</li> <li>▪ 범죄인의 인도에 관한 사항</li> <li>▪ 국제형사사법 공조에 관한 사항</li> <li>▪ 국제수형자이송에 관한 사항</li> <li>▪ 국제형사사건의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li> <li>▪ 국제지적소유권 침해사건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범죄의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li> <li>▪ 형사에 관한 국제회의에의 참가 지원 및 그 개최에 관한 사항</li> </ul>	<p>(02) 503-7058~9  FAX) 3480-3113</p>
형사법제과	<p><b>고유업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사법제(형법 및 형사소송법 및 형사관련 특별법 제·개정)</li> <li>▪ 검찰국장이 명하는 검찰사무에 관한 조사·연구·기획</li> </ul> <p><b>협조업무</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법, 형사소송법 및 형사관련 특별법등 관련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li> <li>▪ 타부처 관계 법령 제·개정시 벌칙관련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li> </ul>	<p>(02) 503-7049  FAX) 3480-3119</p>

**❁ 감찰관실**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감찰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정업무</li> <li>▪ 진정·비위사항의 조사·처리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li> <li>▪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한다)</li> <li>▪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li> <li>▪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li> <li>▪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사항</li> <li>▪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li> <li>▪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li> <li>▪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li> <li>▪ 감찰관의 업무 중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감찰기획관과 감사기획관의 업무 공조가 필요한 사항의 처리</li> <li>▪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와 검찰청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li> </ul>	<p>(02) 502-2693</p> <p>FAX) 502-2694</p>
감사기획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li> <li>▪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li> <li>▪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 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li> <li>▪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li> <li>▪ 그 밖에 장관이 법무부 소속기관(검찰청은 제외한다)·산하단체에 대한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li> </ul>	<p>(02) 502-2693</p> <p>FAX) 502-2694</p>

## ❁ 보호국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보호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보호행정 관계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li> <li>▪ 보호행정공무원의 배치</li> <li>▪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 심사위원회·보호관찰(지)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li> <li>▪ 보호행정 예산의 편성·배정에 관한 자료작성</li> <li>▪ 치료감호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 심사위원회·보호관찰(지)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 하는 사항</li> </ul>	<p>(02) 503-7062~3 FAX) 503-7068</p>
범죄예방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행정 관련 계획수립·시행, 관계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li> <li>▪ 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지)소 소속 공무원 교육 및 복무</li> <li>▪ 치료감호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지)소에 대한 기관 평가 및 지도·감독</li> <li>▪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치료감호청구사건에서 검찰업무수행에 관한 사항</li> <li>▪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결정을 위한 조사 등 그 운영 및 결정의 집행에 관한 사항</li> <li>▪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해촉, 교육훈련 및 업무 지도에 관한 사항</li> <li>▪ 범죄예방관련 민간단체의 업무지도에 관한 사항</li> <li>▪ 청소년 비행 관련 정책개발, 대책수립·시행 및 청소년 민간단체 활동 지원</li> <li>▪ 소년범의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에 관한 사항</li> </ul>	<p>(02) 503-7071~3 FAX) 2110-3331</p>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소년보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보호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소년보호행정 관련 법령의 입안 및 제도에 관한 조사·연구</li> <li>▪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의 교육, 훈련 및 복무 감독</li> <li>▪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에 대한 기관평가 및 지도·감독</li> <li>▪ 소년보호·위탁소년(이하 “보호소년등” 이라한다) 및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소속공무원의 옷·급식에 관한 사항</li> <li>▪ 보호소년 등의 보건위생·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li> <li>▪ 소년원의 초·중·고등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및 학사관리·직업능력개발훈련에 관한 사항</li> <li>▪ 보호소년 등의 생활지도·특별활동 및 교육행사에 관한 사항</li> <li>▪ 보호소년 등의 분류심사·상담조사 등 청소년 비행진단·예방에 관한 사항</li> <li>▪ 일반학교 부적응학생 등의 특별교육 및 청소년 적성검사실의 운영 등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에 관한 사항</li> <li>▪ 보호소년 등의 수용·감호·이송·퇴원·취업 알선·사후지도, 그 밖의 처우에 관한 사항</li> <li>▪ 보호소년 등을 위한 지도위원 위촉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보호소년 등의 수용 통계 및 교육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li> </ul>	<p>(02) 503-7074~5 FAX) 507-6531</p>
보호관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관찰 관련 지침 제·개정</li> <li>▪ 보호관찰 집행에 관한 사항</li> <li>▪ 사회봉사·수강명령 관련 지침 제·개정</li> <li>▪ 사회봉사·수강명령 집행에 관한 사항</li> <li>▪ 성구매자교육(존스쿨)에 관한 사항</li> </ul>	<p>(031) 381-8640~2 FAX) 031)381-8634</p>
법문화진흥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교육 기획·법령·제도연구</li> <li>▪ 법교육 프로그램 연구·개발</li> <li>▪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li> </ul>	<p>(02) 503-7066 FAX) 503-7068</p>

## ❁ 인 권 국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권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내 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관한 조정·총괄</li> <li>▪ 인권옹호에 관한 각 부처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 인권 관련 국제조약·법령에 관한 조사·연구 및 의견의 작성</li> <li>▪ 인권옹호에 관한 종합정책의 수립 및 시행</li> <li>▪ 국가인권위원회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li> <li>▪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li> <li>▪ 인권옹호단체에 관한 사항</li> <li>▪ 인권관련 행사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준법정신의 계도</li> <li>▪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02) 503-7044 FAX) 503-7046</p>
구조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li> <li>▪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 등록·지도·감독 및 지원</li> <li>▪ 법률구조증진에 관한 사항</li> <li>▪ 법률구조법인의 지도·감독</li> </ul>	<p>(02) 500-9251 FAX) 500-9259</p>
인권옹호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사·교정·보호·출입국관리 등 법무행정 분야의 인권 침해 예방과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li> <li>▪ 제1호에 따른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의 자체 조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li> </ul>	<p>(02) 2110-3261 FAX) 2110-3262</p>
여성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무부내 여성관련 정책의 수립·조정·총괄 및 시행</li> <li>▪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법무부소관 법령·제도의 개선</li> <li>▪ 여성관련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부처와의 협조</li> <li>▪ 그 밖에 여성정책에 관한 업무로서 다른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02) 504-6181~2 FAX) 2110-3140</p>

## ✿ 교 정 본 부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교정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정행정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li> <li>▪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의 조직 및 순회점검 등 지도·감독</li> <li>▪ 교정행정관계 각종 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li> <li>▪ 기타 국내 다른 과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li>▪ 교도소·구치소 및 보호감호소 (이하 “교도소 등” 이라 한다)의 순회점검에 관한 사항</li> <li>▪ 교정행정 전산업무에 관한 사항</li> </ul>	<p>(02) 503-7078~80</p> <p>FAX) 502-0129</p>
보안관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구금·이송·처우 및 석방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li>▪ 수용자의 규율·계호 및 보안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li>▪ 교도소등의 경비·비상훈련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ul>	<p>(02) 503-7081</p> <p>FAX) 503-7082</p>
보안경비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방에 관한 사항</li> <li>▪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의 조직 및 정원관리</li> <li>▪ 경비교도의 임용 및 해지</li> <li>▪ 경비교도의 복무·후생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 및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ul>	<p>(02) 503-9928~29</p> <p>FAX) 503-7083</p>
작업훈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도작업특별회계의 경리·용도 및 결산</li> <li>▪ 교도작업 및 감호작업의 계획·관리 및 통제</li> <li>▪ 교도작업특별회계 소관의 물품 및 국유재산 관리</li> </ul>	<p>(02) 503-7084~85</p> <p>FAX) 503-2914</p>
교육교화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의 교정·교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서신, 집필, 도서, 방송 등 교화 관련 수용처우·귀휴·사회견학·가족만남의 날 등 사회적처우</li> <li>▪ 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li> <li>▪ 기타 교정위원, 산하법인 관리 등</li> </ul>	<p>(02) 503-7086~87</p> <p>FAX) 503-7190</p>
복지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li> <li>▪ 교도관, 경비교도 피복 및 급양관리</li> <li>▪ 수용자 급양·피복·의료관리</li> </ul>	<p>(02) 503-7088~89</p> <p>FAX) 502-5516</p>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회복귀 지원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방예정자 교육 및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li> <li>▪ 교정위원의 위촉·해촉 등에 관한 사항</li> <li>▪ 교화 및 사회복귀지원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인·허가</li> <li>▪ 수형자의 귀휴 및 사회견학 계획의 수립·시행</li> <li>▪ 취업알선협의회의 운영 및 지도</li> </ul>	<p>(031) 478-5111~2</p> <p>(FAX) (031)478-5120</p>
분류처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형자의 분류처우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li> <li>▪ 개별처우계획의 수립 및 처우프로그램의 개발</li> <li>▪ 과학적 분류기법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li> <li>▪ 분류처우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가석방심사 업무에 관한 사항</li> <li>▪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ul>	<p>(031) 478-5181~2</p> <p>(FAX) (031)478-5191</p>
보건의료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용자의 보건위생관리 종합계획의 수립·시행</li> <li>▪ 수용자의 의료 및 약제에 관한 사항</li> <li>▪ 의료장비의 공급 및 관리계획의 수립·시행</li> <li>▪ 수용자 건강검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li> <li>▪ 수용자 질병예방 관련 업무</li> </ul>	<p>(031) 387-2082~3</p> <p>(FAX) (031)387-2291</p>

## ❁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출입국기획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li> <li>▪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관법령의 입안에 관한 사항</li> <li>▪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의 혁신 및 홍보에 관한 사항</li> <li>▪ 출입국관리공무원의 배치·교육훈련 및 복무감독</li> <li>▪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자료작성</li> <li>▪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예산의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자료 작성</li> <li>▪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에 대한 지도·감독</li> <li>▪ 출입국관리사무소·외국인보호소의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02) 500-9031~2 FAX) 500-9059</p>
출입국심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의 출입심사에 관한 사항</li> <li>▪ 사증 및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심사에 관한 사항</li> <li>▪ 입출항선박 등 검색 및 상륙허가에 관한 사항</li> <li>▪ 출입국규제에 관한 사항</li> <li>▪ 출입국관련 대테러 및 경호안전대책지원에 관한사항</li> <li>▪ 사증면제협정 등에 관한 사항</li> <li>▪ 해상밀입국 등 불법입국의 방지에 관한 사항</li> <li>▪ 국제행사의 안전관리 등 출입국관리의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p>(02) 500-9111~2 FAX) 500-9127</p>
체류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체류관리정책에 관한 사항</li> <li>▪ 산업체에서의 외국인 기술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의 신설·변경 등에 관한 사항</li> <li>▪ 재입국허가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등록에 관한 사항</li> <li>▪ 투자외국인의 체류관리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부여 및 관리</li> <li>▪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제증명의 발급에 관한 사항</li> </ul>	<p>(02) 500-9061~2 FAX) 500-9077</p>

부서명	담당업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조사집행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li> <li>▪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조사에 관한 사항</li> <li>▪ 고발과 통고처분·과태료부과 등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 동향조사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의 활동범위의 제한 또는 준수사항의 결정 및 활동의 중지명령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보호 및 보호외국인의 강제퇴거 등에 관한 사항</li> <li>▪ 외국인보호소 및 보호실의 경비에 관한 사항</li> </ul>	<p>(02) 500-9081~2</p> <p>FAX) 500-9097</p>
국적난민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에 관한 사항</li> <li>▪ 국적상실 및 이탈에 관한 사항</li> <li>▪ 이중국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그 밖에 국적민원에 관한 사항</li> <li>▪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li> <li>▪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li> <li>▪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li> <li>▪ 난민불인정 및 난민인정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li> <li>▪ 난민여행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li> <li>▪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등 국제기구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li> </ul>	<p>(02) 500-9211~2</p> <p>FAX) 500-9236</p>
사회통합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한외국인의 국내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교육 및 정보제공 등 사회적응지원시책의 총괄</li> <li>▪ 외국인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및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li> <li>▪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국민과 외국인 간 화합을 다지기 위한 기념행사 개최</li> <li>▪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시책 추진</li> <li>▪ 사회통합프로그램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과의 업무 협조</li> </ul>	<p>(02) 500-9151~2</p> <p>FAX) 500-9163</p>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외국적동포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대한 정책 수립·시행 및 총괄·조정</li> <li>▪ 재외동포에 대한 법률상담 등 법률적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등에 관한 사항</li> <li>▪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체류심의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외국국적동포의 국내 체류실태 조사·연구 및 자료발간</li> </ul>	<p>(02) 500-9171~2 FAX) 500-9181</p>
국제이민 협력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li> <li>▪ 외국의 출입국·외국인정책 담당기관 등을 통한 관련 외국 정책사례의 수집·교환·관리</li> <li>▪ 출입국·외국인정책과 관련된 국제회의·행사 개최·참가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li> <li>▪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국제기구와의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li> <li>▪ 불법체류외국인 송환 협정 등 출입국·외국인 정책 관련 국제협약의 체결·개정협상의 참가·지원에 관한 사항</li> <li>▪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 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SOFA) 중 출입국분야에 관한 사항</li> <li>▪ 국외주재관과의 업무연락 및 정기보고·평가에 한 사항</li> <li>▪ 주한 외국공관원과의 출입국·외국인정책 관련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li> </ul>	<p>(02) 500-9191~2 FAX) 500-9201</p>
정책기획 평가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정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총괄</li> <li>▪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정책에 관한 협의·조정</li> <li>▪ 외국인정책의 총괄추진을 위한 관련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의 사무처리</li> <li>▪ 외국인정책 추진 관련 부처간 정보제공 등에 관한 사항의 총괄</li> <li>▪ 외국인정책 평가기법의 개발</li> <li>▪ 외국인정책에 관한 계획수립 및 추진실적의 점검·관리</li> <li>▪ 외국인정책 관련 자료의 종합 분석·평가</li> </ul>	<p>(02) 500-9011~2 FAX) 500-9026</p>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정보분석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 계획의 수립</li> <li>▪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 및 국적통합관리시스템 등 출입국·외국인정책행정정보시스템의 연구·개선</li> <li>▪ 생체인식기술 등 국내외 첨단기술을 응용한 출입국·체류심사제도의 연구·개선</li> <li>▪ 출입국자·체류외국인·국적 등 외국인정책 수립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 및 분석</li> <li>▪ 외국인의 출입국·조사 및 보호 등과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의 분석</li> <li>▪ 여권·사증 등 문서의 위조·변조 감식 및 분석 기법의 개선에 관한 사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02) 500-9131~2  FAX) 500-9141</p>

## ❁ 총 무 과

부 서 명	담 당 업 무	전화번호/ 팩스번호
총무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안</li> <li>▪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li> <li>▪ 공무원의 복무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li> <li>▪ 기록물의 분류·수발·보존·이관·활용 및 자료관의 운영·관리</li> <li>▪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사항</li> <li>▪ 물품의 구매 및 조달</li> <li>▪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li> <li>▪ 일반회계예산과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예산의 집행</li> <li>▪ 기타 부내 다른 실·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ul>	<p style="text-align: center;">(02) 2110-3063  FAX) 504-3337</p>

## 2. 정보공개 관련 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1.3 법률 제8171호]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2.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정보공개 원칙)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③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분석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및 공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5조 (정보공개청구권자) ①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②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공공기관의 의무)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적절한 보존과 신속한 검색이 이루어지도록 정보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정보공개업무를 주관하는 부서 및 담당하는 인력을 적정하게 두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2.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공사)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②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은 당해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

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공개장소를 확보하고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제3장 정보공개절차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②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성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③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공공기관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제10조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①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당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거나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1. 청구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2.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때에는 담당공무원 또는 담당임·직원(이하 “담당공무원등”이라 한다)의 면전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공무원등은 정보공개청구 조서를 작성하고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정보공개외의 청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 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①공공기관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외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공개외부된 공개대상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외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을 한 공공기관은 지체없이 소관기관 및 이송사유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외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외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심의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소속공무원, 임·직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지명 또는 위촉하되, 그 중 2분의 1은 당해 국가기관등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국가기관은 당해 국가기관의 장이 외부전문가의 위촉비용을 별도로 정하되, 최소한 1인 이상은 위촉하여야 한다.

④심의회의 위원장은 제3항에 규정된 위원과 같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국가기관등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 ⑤제2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심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⑥심의회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정보공개여부결정의 통지) ①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공개대상정보의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③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당해 정보의 원본이 오손 또는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④공공기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부분공개)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 ①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인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에 대하여 청구인이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당해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전자적 형태로 변환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③정보의 전자적 형태의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1. 법령 등에 의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된 정보
2. 일반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작성된 각종 홍보자료
3. 공개하기로 결정된 정보로서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아니하는 정보
4.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

제17조 (비용부담) ①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 ②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사용목적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 및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장 불복구제절차

제18조 (이의신청)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이내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행정심판)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②청구인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③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중 정보공개여부결정에 관한 행정심판에 관여하는 위원은 재직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제3항의 위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의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 (행정소송)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②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사자를 참여시키지 아니하고 제출된 공개 청구정보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할 수 있다.

③재판장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제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중 국가안전보장·국방 또는 외교에 관한 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처분인 경우에 공공기관이 그 정보에 대한 비밀지정의 절차, 비밀의 등급·종류 및 성질과 이를 비밀로 취급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 및 공개를 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을 입증하는 때에는 당해 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 (제3자의 비공개요청 등) ①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당해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공개결정이유와 공개실시일을 명시하여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의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22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소속하에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2. 정보공개에 관한 기준수립에 관한 사항
3.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 평가 및 그 결과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3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이 경우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은 공무원이 아닌 자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부처의 차관급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정보공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로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절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제도총괄 등)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의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사항 등에 관한 기획·총괄업무를 관장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위원회가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할 수 있다.

③행정자치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에 시정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 (자료의 제출요구) 국회사무총장·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사무처장·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에 관한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 (국회에의 보고) ①행정자치부장관은 전년도에 정보공개 운영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 개회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위임규정)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칙 <제7127호, 2004.1.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1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위원회 설치준비) 행정자치부장관은 이 법 시행전에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원선임 등 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③(정보공개여부 결정기간 등의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 부칙(국가공무원법) <제7796호, 200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⑤내지 <68>생략

### 부칙 <제8026호, 2006.10.4>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제8171호, 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법」”으로 한다.

④생략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7.4.4 대통령령 제19985호]

###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학교
2.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정부산하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5.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제2장 정보공개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의무

제3조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2.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제4조 (행정정보의 공표 등) ①공공기관은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정부간행물의 발간·판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공표한 정보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종합목록의 발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 (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목록에는 문서 제목·생산연도·업무담당자·보존기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4.4>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절차를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청구서식, 수수료 그 밖의 주요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비치하여 일반국민의 열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공기관은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청구서식·컴퓨터단말기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제3장 정보공개절차

제6조 (정보공개청구방법 등)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한다.

②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즉시 또는 구술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2. 우편·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

제7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일시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되거나 공개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2.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청구된 정보와 관련있는 제3자의 의견청취,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

한 경우

3.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부분과 비공개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하여진 기간내에 부분공개가능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4.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의 폭주 등으로 정하여진 기간내에 공개여부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

제8조 (제3자의 의견청취) ①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의견청취는 문서에 의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제3자가 원하는 때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의견을 청취하는 담당공무원 등은 구술내용을 기록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정보생산 공공기관의 의견청취) 공공기관은 공개청구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공공기관이 생산한 정보인 때에는 그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조) ①정보공개청구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관계기관 또는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는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후 지체없이 처리기간의 범위내에서 회신기간을 명시하여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 또는 부서는 그 회신기간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공개심의회) ①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업무성격이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그 기관 또는 소속기관에 1개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③심의회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④심의회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⑤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회가 설치된 국가기관등의 장이 정한다.

제12조 (정보공개일시의 통지 등) ①공공기관은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제3자의 비공개요청에 불구하고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결정을 하는 때를 제외한다)에는 지체없이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공개일시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요청하는 때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하는 때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청구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공개일 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3조 (부분공개) 공공기관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공개결정을 하는 때에는 비공개하는 부분에 대하여 비공개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4조 (정보공개방법) ①정보의 공개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문서·도면·사진 등은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2. 필름·테이프 등은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의 교부
  3. 마이크로필름·슬라이드 등은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물의 교부
  4.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전자우편으로 송부,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교부
- ②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제1항 각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타인의 지적소유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15조 (정보공개시 청구인의 확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공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때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외국단체등록증 그 밖에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③공공기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 (비용부담)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또는 인화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구분하되, 수수료의 금액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수수료의 금액은 조례로 정한다.

②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공개하는 때에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을 제외한다)의 장은 업무 부담을 고려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수수료의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2.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공공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감면비율을 정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정부기관에는 수입인지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수입증지로,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공공기관에는 현금으로 각각 납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때에는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제4장 이의신청

제18조 (이의신청)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이름)와 연락처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 ②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결정기간의 연장을 통지하는 때에는 통지서에 연장사유·연장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③ 공공기관은 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불복방법 및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④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 제5장 정보공개위원회 등

제19조 (심의·조정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그 밖에 정보공개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표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법 제2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법무부·행정자치부 및 기획예산처의 차관과 국무조정실 기획수석조정관을 말한다.

제21조 (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
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제24조 (사무기구) 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위원회의 사무처리는 행정자치부 행정혁신국장이 수행한다.

제25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참석하는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영에 규정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7조 (운영실태평가)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는 때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평가의 취지 및 내용과 담당공무원의 인적사항 및 방문일시를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 (자료제출) ①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과 이 영 제2조 각호의 기관은 전년도에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에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10일까지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포함한 전년도 정보공개운영실태를 매년 2월 말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매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정보공개운영실태를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29조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에 관한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2.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 부칙 <제18493호, 2004.7.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영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 (공개일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례)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무원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② 관세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6조제3항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각호”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호”로 한다.

③ 방송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④법제업무운영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6항”으로 한다.

⑤지식정보자원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중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를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제1항”으로 한다.

#### 부칙(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985호, 2007.4.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중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록물등록대장 및 기록물철등록부와 동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목록으로”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로 한다.

②생략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2004. 7. 29. 행정자치부령 제24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보공개청구서의 서식)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청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정보공개처리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여부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② 영 제6조제2항 및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4조(제3자의 의견청취관련 서식) ①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의 의견제출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술로 제3자의 의견청취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의 서식) 법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여부 결정에 대한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정보공개 위임장 서식) 영 제15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위임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수수료의 금액) 영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금액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와 같다.

제8조(이의신청처리관련 서식) ①법 제18조제1항 및 법 제21조제2항과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18조제2항과 영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8조제4항에 의한 이의신청처리대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자료제출) 영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공개운영실태의 제출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 3.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 ❁ 법무부 행정정보공개지침

[개정 2006. 4.27. 법무부 예규 제751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우리 부의 행정정보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무부 본부·그 소속기관(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이하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행정정보공개제도 운용에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 원칙) ①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사무관리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공문서 등의 공개여부를 분류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 공개로 분류된 공문서 등은 공개 청구시 원문 그대로 공개하고 공개·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부분공개로 표시된 문서 등은 비공개 부분을 가리고 공개하되, 부분공개 대상 공문서 등을 전체 비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는 현재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정보의 일부를 발췌·요약하는 등 별도의 가공된 형태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청구인의 동의를 얻어 부분적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특별한 사정”은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와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되어 공개함이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제4조(미보유 정보 등의 처리원칙)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정보, 즉 실체가 존재하지 않은 문서 등에 대하여 공개청구가 된 경우에는 법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따라 “미보유” 사유로 비공개 결정·통지한다.

제5조(생산단계에서 공개여부 명확화) ① 공개청구에 신속하게 응하기 위하여 공문서 등의 생산·결재 단계에서부터 공개여부를 실질적으로 분류(공개·부분공개·비공개 중 하나를 기입)하여야 한다.

② 각종 보고서, 계획서, 검토서 등 간이기안문 형태의 내부결재 문서도 반드시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 3 서식에 따라 공개여부를 분류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목록 등의 작성·비치) ① 시행령 제5조의 정보목록은 다음 각호에 따라 매월 작성한 후 게시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1. 각 실·국은 월별 기록물 등록대장(비공개·부분공개 대상정보 목록 포함)을 출력하여 목록별 공개여부를 검토한 후 매월 5일까지 총무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총무과는 각 실·국별 기록물 등록대장을 종합하여 매월 10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록물등록대장의 출력물을 민원실 등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총무과는 정보공개절차 등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행령 제5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을 작성하여 법무부 홈페이지와 민원실 등에 게시·비치하고 본부 및 소속기관 등에 배부하여야 한다.

③ 소속기관 및 단체에서는 본부에서 배부한 정보공개 편람과 본부에 준하는 정보목록을 작성하여 민원실 등에 비치·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법 제7조에 따른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범위와 공표주기 등은 “별첨 1” 및 “법무부 기록관리표준서”와 같다. 본부 각 소관부서에서는 이를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의 공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은 본부의 행정정보 공표범위(“별첨 1” 및 “법무부 기록관리표준서” 참조)내에서 소관 행정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산하단체는 법무부에 준하여 자체실정에 맞는 공표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 ①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와 관련하여 본부 및 소속기관에 적용하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은 “별첨 2” 및 “법무부 기록관리표준서”와 같고, 단체는 법 제9조 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자체 세부기준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동 세부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문서 등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법 제9조제1항 각호의 범위 내에서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전자적 공개기반 조성) ① 정보화담당관실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의 「행정정보공개」 코너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련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
  2. 전자결재시스템과 홈페이지와의 연계를 통하여 공표대상 문서 등이 결재 완료시 자동으로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조치
- ② 각 실·국별의 소관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야 한다.
- ③ 각 실·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게시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삭제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 ④ 기관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장은 체계적 정보공개를 위하여 관련시스템 등의 정비·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공개책임관) ①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조정하고 교육·지도,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부의 정보공개책임관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의 정보공개책임관은 당해 기관장이 지정하는 기획관련 부서의 장이 된다.

제11조(정보공개 주관 및 처리부서) ① 공개청구서의 접수·배부, 공개제도의 운영은 총무과에서 담당하고 공개여부의 결정·통지 등은 당해 정보를 관장하는 소관부서에서 실시한다.

② 공개청구 내용이 여러 부서에 관련된 경우에는 소관 행정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에서 처리주체가 되어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고 그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처리주체를 정한다.

제12조(공개정보의 목록 등록) 정보공개청구 등에 따라 공개·부분공개한 정보는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목록(보유기관 및 부서명, 공개정보명, 공개범위 등)을 홈페이지의 공개정보 목록 코너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으로 청구·처리된 사항은 제외한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형태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일천원이하의 수수료는 납부를 면제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제5항의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수수료의 50퍼센트 감액율을 적용한다.

③ 우편요금은 정보공개청구서 등에 특별히 우송방법이 적시되어 있지 않는 한 등기발송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공개심의회)** ① 정보공개심의회는 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부 및 소속기관별로 설치하여 운영한다. 단, 지소·출장소의 경우 본소 등의 정보공개심의회에서 그 사무를 관장한다.

② 본부의 위원장은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되고, 위원은 법무과장, 검찰과장, 보호과장, 교정기획과장, 출입국기획과장, 총무과장으로 하되, 학계·법조계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의 외부전문가 1명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하고 간사는 총무과 정보공개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 정보공개심의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문서 등에 대한 심의
2.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별첨 2 및 법무부 기록관리표준서)”에 포함되지 않는 문서 등에 대한 비공개 결정 심의
3.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4.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심의 등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⑤ 회의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되 필요시 서면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회의시 간사는 심의내용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⑥ 산하단체는 자체 실정에 맞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비공개 결정 등에 대한 통제강화)** ① 비공개 결정에 신중을 기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하여 본부 각 실·국의 처리부서에서는 부분·비공개 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사전에 송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거쳐 부분 또는 비공개 등으로 결정·통지된 이후 당해 사안을 처리부서에서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무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송무과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로부터 협의 요청 이 있는 경우 공개청구 등의 처리기한을 감안하여 신속히 검토한 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본부 각 실·국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직원이 이 지침을 준수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그밖에 정보공개 확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 교육) 본부 및 소속기관 등의 장은 소속직원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 부 칙

이 지침은 '06. 4. 27.부터 시행한다.

별첨 1)

## 공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목록

### 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장 소	실 시 부 서
공 통	법무행정 분야별 주요 정책 현황	제도개선, 정책 결정·추진실적 자료	수 시	결재시 등	홈페이지	각 실·국
정 책 홍 보	대통령 업무보고 (연도별 주요업무 계획)	업무보고서	수 시	보고시	홈페이지	재 정 기획관실
	국회관련 자료	질의·답변 자료 (개인 식별자료 제외)	수 시	제출·보고시	홈페이지	재 정 기획관실
		업무현황·현안보고 자료	수 시	제출·보고시	홈페이지	재 정 기획관실
	월간업무 추진 현황	월간 업무추진 실적·계획 보고서	매 월	월 초	홈페이지	재 정 기획관실
	예산 현황	세입·세출 예산 현황	매 년	1월중	홈페이지	재 정 기획관실
법 무	법무부 소관 법령 제·개정안 및 입법예고안	개정·예고안	수 시	수 시	홈페이지	법 무 심의관실
	민사·상사·행정소송 등에 관한 유권해석	질의 및 유권 해석 자료	수 시	수 시	홈페이지	법 무 심의관실
	부동산 실명제 관련 질의 응답 자료	질의 및 응답 자료	수 시	수 시	홈페이지	법 무 심의관실
정 책 홍 보	세입·세출 결산 현황	결산개요	매 년	국 회 제출시	홈페이지	재 정 기획관실

## 2.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장 소	실 시 부 서
총 무	입찰관련 자료	입찰계획서 및 결과	수 시	공고시 등	홈페이지	총무과

## 3. 주요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장 소	실 시 부 서
공 통	법무행정분야별 정책 수립과정에서 생산된 각종 자료	연구보고서, 검토서, 공청회 자료	수 시	정 책 수립시	홈페이지	각 실·국
정 책 홍 보	대통령 공약사항, 지시 사항의 추진상황 등	지시요지 및 추진 상황	반 기	1월,7월	홈페이지	혁신인사 기획관실
법 무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심의결과	반 기	회의시	홈페이지 (사법시험)	법조인력 정 책 과

## 4.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장 소	실 시 부 서
총 무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장·차관 업무 추진비 사용내역	분 기	1·4· 7· 10월	홈페이지	총무과

### 5. 각종 평가결과·통계자료 등의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장 소	실 시 부 서
정 책 홍 보	주요정책 평가결과	심사평가 결과	반 기	1월, 7월	홈페이지	혁신인사 기획관실
	규제개혁 추진상황	규제완화 및 추진 상황	수 시	수 시	홈페이지	혁신인사 기획관실
	법무연감	전체	매 년	발간시	홈페이지	재 정 기획관실
	법무부 소속직원의 정·현원 인사통계	직급별 인원현황	매 월	익월초	홈페이지	혁신인사 기획관실
법 무	법무관련 통계	국적민원 처리현황	매 월	발행시	홈페이지	국적난민과
		법령자문접수 처리현황	수 시	작성시	홈페이지	법 무 심의관실
	도서실 보유장서 현황	보유장서 목록	수 시	작성시	홈페이지	법 무 심의관실
검 찰	검찰관련 통계	사형집행·형사보상 금 집행·범죄피해자 구조금 지급·사면 현황	수 시	변동시	홈페이지	형 사 기획과
보 호	보호관련 통계 (통계연보)	감호청구 현황, 비행 청소년 선도·보호현 황, 보호관찰 및 갱생 보호활동 현황	매 년	발행시	홈페이지	보호과
	보호관찰관련 통계 (통계연보)	대상자 관리·사회봉 사·수강명령·조사 업무 처리·범죄예방 위원활동 현황	매 년	발행시	홈페이지	관찰과
	소년보호관련 통계 (통계연보)	수용·교육·분류심사 현황	매 년	발행시	홈페이지	소년2과
교 정	교정관련 통계	수용·교육훈련·교도 작업 운영현황	매 년	발행시	홈페이지	보안관리과 교육교화과 작업훈련과
출 입	출입국관리관련 통계 (통계연보)	국민출국자·외국인 입국자·등록외국인· 사증발급·남북왕래자 현황	매 년	발행시	홈페이지	체 류 정책과

## 6. 기타 정보

구분 소관	대 상 정 보	범 위	주 기	시 기	장 소	실 시 서
공 통	인사자료	인사발령(임용, 승진, 전보) 자료	수 시	발령시	홈페이지	각 실·국
	훈령·예규(비공개 대상 훈령·예규 제외)	전문	수 시	제·개정시	홈페이지	각 실·국
	고시·공고	고시·공고문	수 시	공고시 등	홈페이지	각 실·국
	보도자료	보도자료	수 시	송부후	홈페이지	각 실·국
총 무	정보공개업무 자료	법무부 행정정보 공개 지침	수 시	제·개정시	홈페이지, 민원실	총무과
		정보공개업무 편람	수 시	작성, 변동시	홈페이지, 민원실	총무과
		정보목록	매 월	매 월 10일 까지	홈페이지, 민원실	총무과

별첨 2)

## 비공개대상 법무행정정보의 세부기준표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 정보) 제1항 각호》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소관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비밀문서	비밀문서	각 실·국
감 사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서류	감사담당관실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정책홍보	법무시설기준규칙	동 지침	시설관리담당관실
교 정		교정시설 방호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보안관리과
		교정시설별 수용자 분류 수용에 관한 업무	관련 문서	보안관리과
출 입		난민인정 관련 업무	관련 문서(관련 지침은 제외)	체류정책과
		사증발급 관련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소관	구분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검 찰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운영	관련 문서 전체	공공형사과
검 찰		국가보안유공자상금심사위원회 운영	관련 문서	공공형사과
출 입		출국금지·정지 관련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입국금지 관련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입국규제 업무	관련 문서	출입국심사과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검 찰	형사·공안사건의 범죄예방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내부검토·의견수렴·조정 중에 있는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검찰사무보고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범죄정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수사지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형사기획과 공공형사과
보 호	사회보호위원회심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호과
	판결전 조사 등 조사업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관찰과
	집행유예취소 등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관찰과
	분류처우심사 등 수용처분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제2과
	교과·생활성적 등 평가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제2과
	보호소년 외부행사 감호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제2과
	보호·위탁 소년이송 및 호송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제2과
	보호소년 (가)퇴원 업무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소년제2과
교 정	수용관리에 관한 사항	특이수용자 지정 및 처우 관련 문서	보안관리과
	이송 및 명적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안관리과
	계호, 징벌 및 계구에 관한 사항	관련 문서	보안관리과
	수용자 접견에 관한 사항	접견관련 예규 및 접견부 등 관련 문서	보안관리과
	분류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분류심사 및 가석방심사 관련 문서	보안관리과
출 입	외국인 체류관리 업무	관련 지침	체류정책과
	출입국관련 사범처리 업무	관련 문서	조사집행과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검토, 의견수렴, 조정 중에 있는 문서	관련 문서	각 실·국
	승진, 전보 등 인사계획	관련 문서	각 실·국
	다면평가	관련 문서	각 실·국
	근무성적평정	관련 문서	각 실·국
법 무	법무자문위원회 및 산하 특별분과위원회 회의자료	관련 문서	법무심의관실
	법령안 기초 및 심사에 관한 자료	관련 문서	법무심의관실
	변호사징계위원회 및 공증인징계위원회 회의자료	관련 문서	법무과
	공증인 서류검열 결과	관련 문서	법무과
	귀화, 국적회복 및 결정이유	관련 문서	국적난민과
	사법시험관리위원회 회의자료	관련 문서	법조인력정책과
	사법시험 제1·2차 시험과목별 성적분포, 과락율	관련 문서	법조인력정책과
	사법시험 제2차 시험전체 성적분포, 과락율, 채점기준표, 문항별 점수	관련 문서	법조인력정책과
	사법시험 제3차 채점내역	관련 문서	법조인력정책과
감 사	감사결과 보고 및 조치지시	관련 문서	감사담당관실
	불시 감찰·조사계획	관련 계획	감사담당관실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각 실·국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단,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제7호의 단서에 해당되는 정보는 제외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교 정	수용자 위탁·외부통근 작업 업무	외부기업체와 계약 등 영업상 비밀관련 사항	작 업 훈련과

8. 공개될 경우 부동산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구분 소관	업 무	범 위	관리부서
공 통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8호의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는 정보	각 실·국

## 4. 각종 정보공개 관련 서식

###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 법 인 명 등 및 대 표 자 )	주 민 등 록 ( 여 권 · 외 국 인 등 록 ) 번 호	
	주 소 ( 소 재 지 )	사 업 자 ( 법 인 · 단 체 ) 등 록 번 호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 령 방 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인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의 장) 귀하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접 수 일 자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법인명등 및대표자)			주민등록(여권· 외국인등록)번호			
			사업자(법인·단체) 등 록 번 호				
	주 소 (소재지)			전 화 번 호 (모사전송번호)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공 개 형 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 령 방 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type="checkbox"/> 해당없음					
	감 면 사유						
구 술 청 취 자 (담당공무원등)		직 급			이 름	서 명 또는인	
구 술 자 (청 구 인)	기관인 경우	기관명			직 급	서 명 또는인	
					이 름	서 명 또는인	
	일반인 인 경우	이 름					서 명 또는인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p>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접 수 기 관)</p> <p>※정보공개의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제3자 의견서(비공개요청서)

제 3 자	이 름		주 소	
	연락처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전 자 우 편 주 소 :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사용 가능)				
종 합 의 건	<input type="checkbox"/> 정보공개 허용 <input type="checkbox"/> 비공개요청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1조제3항,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에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의견서[비공개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 제출(비공개요청)인			(서명 또는 인)	
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앞쪽)

## 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결정통지서

수신자

접수일자		접수번호	
청구정보내용			
공개내용			
비공개(전부또는 일부) 내용 및 사유			
공개방법	공개형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교부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 방문 <input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	
공개일시(기간)		공개장소	
수수료(A)	우송료(B)	수수료감면액(C)	계(A+B-C)
원	원	원	원
수수료산정내역		수수료 납입계좌(입금시)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기관의 장)		인	
기안자(직위/직급) 서명	검토자(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직위/직급) 서명	
협조자(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 (시행일자)			
우            /주소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담당자 공식 전자우편주소	/공개구분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유 의 사 항

- 정보공개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입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 수수료는 해당 정보를 공개할 때 수입인지(정부기관), 수입증지(지방자치단체) 또는 현금(기타 공공기관)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우송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고자 하는 때에는 앞면에 기재된 공개일까지 수수료(공공기관에 따라 수입인지·수입증지 또는 현금)와 우송료(우표 등)를 공공기관에 보내셔야 합니다.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동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기관에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후 10일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처리 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의견청취서

접 수 일 자				접수번호					
청 구 인	이 름				주 소				
정 보 내 용									
의 건 청 취 일 시									
의 건 청 취 내 용									
기 타 참 고 사 항									
의 건 청 취 자 (담당공무원등)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구 술 자 (제 3 자)	기관인 경 우	기관명				직급			서명 또는 인
						이 름			
	연락처								
일반인인 경 우	이 름						서명 또는 인		
	주 소								
	연락처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5. 수수료 산정 기준표

### 수수료 산정기준표(시행규칙 제7조)

공개대상	공개 방법 및 수수료			
	원본의 열람·시청	원본의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전자파일의 열람·시청	전자파일의 사본(출력물)·복제물
문서·대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매 기준)1회 : 200원</li> <li>·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1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이상 300원</li> <li>· 1매 초과마다 100원</li> <li>- B4이하 250원</li> <li>· 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매 기준) 1회 : 200원</li> <li>· 10매 초과시 5매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이상 300원</li> <li>· 1매 초과마다 100원</li> <li>- B4이하 250원</li> <li>· 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매 기준)1회 : 200원</li> <li>-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도면·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매 : 200원</li> <li>· 1매 초과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1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이상 300원</li> <li>· 1매 초과마다 100원</li> <li>- B4 이하 250원</li> <li>· 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매 : 200원</li> <li>· 1매 초과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이상 300원</li> <li>· 1매 초과마다 100원</li> <li>- B4이하 250원</li> <li>· 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li>○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매 기준)1회 : 200원</li> <li>- 10매초과시 5매마다 1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녹음 테이프(오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개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마다 3,000원</li> </ul> </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 : 1,500원</li> <li>· 30분 초과시 10분마다 5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li> <li>-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li> </ul> </li> </ul> <p>※ 매체비용은 별도</p>
녹화 테이프(비디오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5,0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마다 3,000원</li> </ul> </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영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이 1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켤(60분 기준)마다 3,500원</li> </ul> </li> <li>- 여러 편이 1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li> </ul> </li> </ul> </li> </ul>	-		
슬라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3,0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200원</li> </ul> </li> </ul>	
마이크로 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0컷 기준) 1회 : 500원</li> <li>· 10컷 초과시 1컷마다 10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출력물 : 1매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3 이상 300원</li> <li>· 1매 초과마다 200원</li> <li>- B4이하 250원</li> <li>· 1매초과마다 150원</li> </ul> </li> <li>○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롤마다 1,0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	-
사진·사진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매 : 200원</li> <li>· 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화(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500원</li> <li>· 1매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200원</li> <li>5"×7" 300원</li> <li>8"×10" 400원</li> </ul> </li> </ul> </li> <li>○ 복제(필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마다 6000원</li> </ul> </li> </ul> <p>※매체비용은 별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매 : 200원</li> <li>· 1매 초과마다 50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컷 250원 1매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3"×5" 50원</li> <li>5"×7" 100원</li> <li>8"×10" 150원</li> </ul> </li> </ul> </li> <li>○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건(1MB 기준)1회 : 200원</li> <li>- 1MB초과시 0.5MB마다 100원</li> </ul> </li> </ul> <p>※ 매체비용은 별도</p>

※ 전자우편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 전자파일의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 산정

## 6.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안내문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안내문

1. ‘접수일자’, ‘접수번호’란은 공공기관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2. ‘청구인’란은 이름, 주소 등 청구인 관련 정보를 기재합니다.
  - 가. ‘이름’란에는 개인의 경우 이름, 법인의 경우 법인명 내지 대표자 이름을 기재합니다.
  - 나. ‘주소’란에는 개인 내지 법인의 주소 내지 생활의 근거되는 곳(수용자의 경우 수용기관 주소)을 기재합니다.
  - 다. ‘주민등록번호’란에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여권번호 내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 라. ‘사업자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단체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수용자의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 마. ‘전화번호’란에는 일반전화 내지 개인휴대폰번호를 기재합니다.(수용자의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 바. ‘전자우편주소’에는 E-mail주소를 기재합니다.(수용자의 경우 기재하지 않습니다.)
3. ‘정보내용’에는 청구한 정보를 기재합니다.
  - ※ 이미 일반에 공개된 정보는 동법상의 공개 청구대상 정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 청구인은 공공기관이 관리하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에 대하여만 공개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당해 정보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문서제목, 작성일자, 문서번호나 관련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서울행법 2000. 4.28.선고 2000구4179판결)
  - ※ 정보공개청구에 있어서 그 목적에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오로지 상대방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그 정보공개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6. 8.24.선고 2004두2783판결)

4. ‘공개형태’는 공개시 정보의 형태를 표기(V)합니다.
  - 가. ‘열람·시청’은 열람 장소를 확보한 후 청구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사본·출력물’은 복사물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 ‘전자파일’은 저장매체(디스켓, CD 등), 전자우편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 라. ‘복제·인화물’은 인화물의 형태로 청구인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5. ‘수령방법’은 청구인이 청구정보 수령시 원하는 방법을 표기(V)합니다.
6. ‘수수료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
  - 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 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 ‘접수증’은 공공기관에서 기재하는 사항으로서 청구인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정 보 공 개 청 구 서

※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는 청구인이 기재하지 아니합니다.

※ 접 수 일 자			※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법인명등 및 대표자)	홍 정 보	주 민 등 록 ( 여 권 · 외 국 인 등 록 ) 번 호	681025-1234567
	주 소 (소재지)		사 업 자 ( 법 인 · 단 체 ) 등 록 번 호	(031) 123 - 456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암동 123-45번지	전 화 번 호 ( 모 사 전 송 번 호 )	abc1234@hanmail.net
			전 자 우 편 주 소	
정 보 내 용		'07.7.2.청구인이 가해자로 되어있는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1.○○ 교도소 수용중에 형의 관련된 내용을 포함한 '07.8.4.접견표, 2. '07.8.1부터 9.15까지 청구인 관련 소송서류 수·발신 기록		
공 개 형 태		<input type="checkbox"/> 열람·시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사본·출력물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일 <input type="checkbox"/> 복제·인화물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 령 방 법		<input type="checkbox"/> 직접방문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우편 <input type="checkbox"/> 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수 수 료 감 면	해 당 여 부	<input type="checkbox"/> 해당 <input checked="" type="checkbox"/> 해당없음		
	감 면 사 유	※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합니다.				
2007 년 11 월 28 일				
청 구 인 <span style="color: blue; font-size: 1.2em;">홍 정 보</span> (서명 또는 인)				
○ ○ 교 도 소 장 귀 하				

### 접 수 증

접 수 번 호		청 구 인 이 름	
접 수 자	직 급	이 름	(서명 또는 인)
귀하의 청구서는 위와 같이 접수되었습니다.			
년 월 일			
(접 수 기 관)			
※ 정보공개 처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행정정보공개제도 이용안내

---

발 행 일 : 2007년 12월

발 행 처 : 법무부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1동

전화 : 02-2110-3485, 팩스 : 02-2110-3079

인 쇄 처 :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리드릭)

전화 : 02-2269-1919, 팩스 : 02-2268-0300

---

